

[논 문]

戶籍資料를 통해본 朝鮮後期 漁村社會의 家族關係*

- 巨濟島 舊助羅 ‘項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

이 종 길**

《차 례》

- | | |
|---------------------------------------|-------------------------------------|
| I. 序 言 | III. 巨濟島 舊助羅 ‘項里戶籍中草’에 나타나는 家族關係 분석 |
| II. 巨濟島 舊助羅‘項里戶籍中草’의 연 구의의와 島內面里制의 변화 | IV. 맺음말 |

I. 序 言

1. 바다에 연하여 이루어지는 어촌사회는 농촌사회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 왜구세력이 빈번하게 출몰하며 중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遠隔地에 존재하는 관계로 전통사회에서는 유배 죄인들의 배소로 활용되었으며,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각종의 산물들이 농촌과는 확연히 다른 특별함이 존재한다. 어촌에서 삶을 하는 사람들의 끈고함은 바다라는 불안정성으로부터 기본적 연원을 갖게 되는 것과 함께, 이러한 바다에 대부분의 삶을 의존하여야 하는 생활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연구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NRF-2010-327-A00007)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여건으로 인하여 대외적 배타성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 및 의존성을 각별하게 보유한다. 또한 어촌사회는 바다가 갖는 일반적 특성 외에도 육지에 연한 해안지역인지, 육지와 절연된 섬지역인지 등에 따라 또 다른 특성이 상이하게 존재한다. 육지에 연한 어촌사회는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섬 지방은 특별한 국가관리 정책에 의하여 입도가 장려되거나, 외세의 침공에 대한 대응 및 유배지로서의 활용 등으로 시대상황에 따라 정책이 조율되어온 측면, 그리고 궁벽한 섬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탐관들로부터 겪어야하는 학정의 실상이 유별나기도 한다.¹⁾

본고는 조선후기 거제도 어촌사회에서 작성된 동리민의 完文·書目 등의 고문서와 호적자료를 기초로 당시의 어촌사회상과 가족관계에 대한 일면적 이해를 추구한다. 즉, 1800년대 후반의 어촌사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가족 관계를 현전하는 호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 및 사회관계속에서 구체적 인간의 삶에 대한 실상을 구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巨濟島 舊助羅(項里)에서 발견된 어촌사회고문서와 戶籍資料를 분석 검토한다.

2. 戶籍은 일정영역을 기준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일차적으로 그러한 국가의 관리를 위해 그 영역 내에 정주하는 인구에 대해 조사 기록한 국가차원의 기본자료이다. 국가는 호적자료에 기록된 인구에 대해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국가에 대해 이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를 유지 관리하는데 요구되는 조세와 병역의무 등을 기본으로 하여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각종의 부담은 이러한 호적자료의 작성내용을 기초로 한다.²⁾

1) 본 연구의 대상자료가 되는 거제도고문서자료집 역시 조선후기의 섬지역 거제도 어촌사회의 내용을 다양하게 수합하여 기록하고 있는 자료집으로, 『古文書集成35-巨濟舊助羅里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8 간행자료집이다. 거제군에 대한 역사적 측면의 개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巨濟郡誌編纂委員會에서 펴낸 『巨濟郡誌』, 1963을 참고할 수 있다. 그밖에도 서남해안 어촌사회의 형성과 입도유래 등에 대한 조사연구자료로 김경옥, 『조선후기 도서연구』, 해안, 2004; 1700년대 조선시대 어촌사회의 촌민에 대한 부세납징과 관리의 부정의에 대한 어촌민들의 저항실상에 대한 자료로 전라남도 신안군문화원에서 발간한 『金理守傳記』, 2009 등 참조요.

2) 호적제도의 기원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와 역사문화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조선사회에 있어 茶山 丁若鏞은 戶籍에 대해 “戶籍은 모든 賦와 徭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호적이 균평한 연후에야 賦役이 균평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³⁾

조선시대의 호적은 3년마다 새롭게 작성한다.⁴⁾ 호적자료는 일반적으로 ‘戶口單子’ ‘戶籍中草’ ‘準戶口’ ‘戶籍臺帳’ 등으로 나누어진다. 호구단지는 개인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국가관리에 소요되는 기초자료이다.⁵⁾ 특히

는 우리사회가 전행으로 삼기도하였던 중국사회사상의 호적에 대한 내용을 검토·소개한다. 우리 역사상의 호적제도 및 그에 대한 기본논의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제도 및 그의 역사상의 논의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사회가 일구어온 논의에 대한 검토이해는 우리제도의 원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단초로 작용한다. 따라서 그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다음에서 간략히 설명하게 된다.

西周후기의 中興之主인 周宣王은 전쟁과 관련하여 ‘料民’을 명하여 호구를 조사하여 兵員을 보충하고 필요한 보급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國語 周語>의 기록에 의하면 周宣王은 반대자인 仲山甫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料民’을 실행하였으며 그런 얼마 후 宣王이 逝世하고 幽王時에 이르러 西周는 멸망한다. 즉, 周代에 分封制와 井田制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토지와 인구에 대한 파악은 동시에 요청되는 사항이 된다. 그러나 宣王이전 시기에 이미 井田외의 私田이 부단하게 출현하면서 내부정치질서가 크게 동요하였으며 분봉제와 정전제를 가능하게 하던 “上下有禮 等級有序”적 禮制가 와해되면서 전통적 典章制度에 의해서는 인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宣王의 ‘料民’을 통해 西周내지 殷商後期에 定時的 호구조사등기제도가 이미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왕조의 후기에 井田制와 分封制의 動搖로 인하여 원래 있었던 호구조사등기제도는 더 이상 실행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料民’은 당시에 대응하는 주요 조치가 되었던 것이다. 宋昌斌, 『編戶齊民--戶籍與賦役』, 長春出版社, 2003. 5~7면 참조.

나아가 春秋戰國時期에이르면 지방정제의 발전으로 諸侯세력이 성장하며 전쟁이 도처에서 빈발한다. 전쟁의 발발로 인해 각 제후국들은 자연히 인구에 대한 登記와 人口保養을 중시하면서 호구관리에 치중한다. 전쟁은 인구와 물자의 관리 조달이 우선하여 요구한다. 따라서 인구를 조사 등기하면서 그에 대한 통제관리를 함께 중시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국력을 파악하여 상대와의 관계에서 전력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관리를 통해 인력유실을 방지하면서 兵役과 賦稅조달을 끊임없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호적제도는 춘추전국시기에 크게 발전하게 된다. 이 시기에 ‘書社制度’는 여러나라에서 보편화된다. 즉, 書社制度는 周代에서 중시되던 제도로, 二十五家の 토지를 기초로 이를 一里로 하고 한 리에 한 社를 세워 그 戶口와 田地의 面積등을 기록한 장부를 만들어 그 社에 보관하게 하던 제도를 말한다. 나아가서 이들 내용은 체계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게 되고 이에 기하여 다음해의 세역부담을 예산하였던 것이다. 또한 춘추전국시기에 많은 제후국들이 실행한 戶籍制度는 정치와 경제 군사적 효용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作內政而于軍令”이 되었다. 호구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春日書比 夏日月程 秋日大稽 與民數得亡”<管子 乘馬>라고 하여 春季에 인구를 등기하고 夏季에는 이를 확인하고, 秋季에는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연후에 인구의 증감정황을 다시 확실하게 등록하게 하였던 것이다. 陸益龍, 『戶籍制度--控制與社會差別』, 商務印書館, 2003. 73~74면 참조.

3) 『牧民心書』 戶典 戶籍條 참조. “戶籍者 諸賦之源 衆徭之本 戶籍均而後 賦役均”.

4) 每三年改戶籍 藏於本曹漢城府本道本邑<『經國大典』 戶典 戶籍條> .

5) 戶口單子와 準戶口는 한 戶의 내용과 역사적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 특히 準戶口는 소송이나 과거응시 등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로서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호적원본을

대소의 訟事로 추문하여야 할 경우에는 호구를 납부토록 하여 이를 확인하여 기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⁶⁾

그리고 조선시대는 五家作統制가 시행되었다.⁷⁾ 오가작통시에는 士大夫·庶民을 구별하지 않고 가옥이 위치하는 순서를 따라서 統을 구성하며, 入籍者에게는 戶口를 만들어 주는 것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⁸⁾ 또한 이러한 호적은 子·卯·午·酉의 式年을 단위로 작성하며 外邑各面의 監官은 士大夫를 골라서 직임을 수행토록 하였다.⁹⁾ 호적중초는 式年의 正月을 기준으로 작성하지만 그 작업은 前年度의 7월경에 시작된다. 호적중초의 작성에 관여하는 마을의 釐正·監考 등은 각 호가 작성한 호구단자를 거두어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마을의 통호별로 호적자료를 재작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를 호적중초라 한다.¹⁰⁾ 이러한 호구단자와 호적중초를 수합하여 검토 후 해당관청에 제출하면 관청은 지난 식년에 제출되어 보관중인 호적자료와 비교 대조하여 그 이상 유무를 표기하고 관청인을 필한 다음 다시 해당 자료를 각 동리로 내려 보낸다. 동리에서는 돌려받은 자료 중 호구단자는 각호에 배포하고 호적중초는 동리에서 보관하면서 賦稅 및 公錢의 賦課·徵收 등에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호적자료작성 과정에 있어 엄격성과 정확성의 강조는 바로 국가를 바

그대로 謄寫하여 당사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호적중초는 마을을 단위로 주민구성 및 賦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적고 있는 자료이다. 호적대장은 군현 등의 상급관청에서 보관하는 자료로서 호구단자 및 호적중초 등을 기초로 작성된 종합적 호적자료이다. 호적대장연구팀 편, 『단성호적대장연구』, 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 2003;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 제20호, 참조요.

- 6) 大小推闕公事 以戶口現納 載錄於頭詞 ○京外聽訟官 若有考籍事 具由移文京兆及該邑 元隻共見處 謄示回答, 勿送帳籍 <『續大典』戶典>.
- 7) 京外以五戶爲一統 有統主 外則每五統有里正 每一面有勸農官(地廣戶多則量加) 京則每一坊有管領 <『經國大典』戶典 戶籍條>; 『肅宗實錄』1年(1675) 9월 辛亥 및 『備邊司謄錄』五家作統事目 등 참조요.
- 8) 士大夫 庶民 一從家坐次序作統 入籍者戶口成給<『續大典』戶典>.
- 9) 式年(子卯午酉年)成籍時 外邑各面監官以士夫擇差 <『續大典』戶典>.
- 10) 巨濟島 項里戶籍中草는 각 式年別 中草資料의 맨 뒷장에 釐正과 監考가 호적중초에 관여한 당사자로서 각자 姓을 쓰고 手決하고 있다. 그러나 일례로 제주도의 大靜縣沙溪里 호적중초를 참고로 보면, 1807년부터 1894년까지의 식년단위 호적중초에서 호적작성의 관여자로서 別有司와 尊位가 관여하고 있으며(1897년과 1898년 자료는 낙장으로 확인불가), 이들은 각자 자신의 姓을 쓰고 手決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1900년 호적중초부터는 別有司와 尊位는 역시 계속하여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姓을 쓰고 手決을 하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厘正과 監考는 그들과 함께 새로이 각자 姓名을 써서 호적중초의 작성에 관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김동진, 상계논문 참조요.

르게 운영할 기초자료로서의 중요성 때문이다.¹¹⁾

본 고의 검토대상이 되는 巨濟島 舊助羅 ‘項里戶籍中草’¹²⁾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하여 보관되어 오던 자료로써 자료에 기록된 내용을 기초로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巨濟島 舊助羅‘項里戶籍中草’의 연구의의와 島內面里制의 변화

1. 본 戶籍資料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의

본 연구는 巨濟島 舊助羅 ‘項里戶籍中草’를 통해 가족관계의 일단을 추론하는데 주목적을 두게 된다. 어촌사회라는 특수성과 1800년대 후반의 조선시대 어촌사회 중에서 섬지방 어촌인 거제도 項里가 갖는 사회상과 결합된 가족관

11) 호적농간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 牧民心書에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7월초하룻날에 10개 式年의 戶籍臺帳과 中草(중초는 초본이다. 이것이 대장에 비해 좀 더 사실에 부합한다)를 아울러 政堂에 가져다가 큰 櫃속에서 잠가 두어서 추가 개작하는 농간을 막을 것이다. 戶總에 관한 영을 내리는 날에 별도로 한 공문을 내려 위에 지적한 여러 가지 弄奸을 엄금하도록 한다. 호적단자가 다 들어오면 수령이 마땅히 몸소 30년간의 옛호적을 가지고서 별도로 자세히 조사할 것이니, 새로운 농간질이 어디 숨을 데가 있겠는가. 농간을 범하는 자에겐 반드시 벌금을 징수할 것이니 각자는 두려워하며 조심하라. 『牧民心書』 戶典六條 第四條戶籍 참조.

七月初吉 取十式年戶籍大帳中草 並置政堂 鎖之大櫃(中草者 草本也 其循實 勝於大帳) 以防追改之奸 戶總發令之日 別下一帖 嚴禁上所列諸奸 諭之曰 籍單齊到 官當親執三十年舊籍 另行查櫛 新作之奸 豈有隱乎 其有犯者 必有罰徵 其各惕慮.

12) 본고의 검토대상자료인 戶籍中草의 명칭에 대해 부연한다. 거제도 지역에서 발견된 고문서를 한국국신문화연구원(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998년에 『古文書集成 三十五—巨濟 舊助羅里篇』이란 제명으로 영인하여 간행하였다. 따라서 이 고문서집성자료집의 내용 중에 호적중초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본 호적중초는 각 식년별로 ‘項里戶籍中草’라고 쓰고 있다. 따라서 본 호적중초의 정식명칭은 거제도 ‘項里戶籍中草’가 된다. 그런데 이를 ‘舊助羅項里戶籍中草’ 또는 ‘舊助羅戶籍中草’ 등으로 편의상 칭명하는 이유는 1915년6월1일(慶南道令 第20號 法定洞里令)에 호적중초작성당시의 ‘項里’를 포함한 일정지역을 기존의 ‘舊助羅里’에 포함하여 洞里名을 변경하게 된 이후 현재까지 ‘舊助羅里’로 리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서 기인한다. 또한 이렇게 변화된 동리인 ‘舊助羅里’에서 위의 자료집에 수록된 고문서가 일괄 발견됨으로 인하여 古文書集成의 편찬과정에서 舊助羅古文書로 통칭한 것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본고의 서술과정에서는 편의상 ‘項里戶籍中草’ ‘舊助羅項里戶籍中草’ 또는 ‘舊助羅戶籍中草’ 등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項里’란 동리명과 관련하여서는 위의 각주 19번 참조요.

계를 호적중초를 통해 이해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게 되는 것이다. 어촌사회와 관련한 그간의 호적자료 연구는 제주도 호적중초에 대한 연구가 대종을 이루지만,¹³⁾ 호적의 작성지역과 시기에 따라 형식 및 내용상의 상이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따라서 호적자료별로 주제를 분류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의 집적을 통해 호적자료의 구체적 성격과 호적과 실제인구 및 사회실상과의 차이, 그리고 당해 호적의 구체적 기능 등에 대한 개괄적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호적중초를 인구의 실제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당시 사회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중요자료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더하여 호적자료가 당시의 사회상 및 사회운영실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이를 기초로 여타의 자료에 대한 방증적 검토를 더해 갈 때 역사속의 사회실상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¹⁴⁾

호적자료는 국가적 측면에서 인구의 산정과 그에 기한 부세징수 및 병역부과에 비중을 두게 된다. 따라서 일면으로는 인구실상을 반영하면서도 일면으로는 국가가 추구하는 일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록과 관리 측면에서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검토대상 자료인 巨濟島 項里戶籍中草는 자녀 중에서 여성이 기록에서 배제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巨濟島 項里호적중초에서 파악되는 인구는 濟州道 沙溪里戶籍中草와 비교할 때 인구수가 대단히 적음을 알 수 있다.¹⁵⁾ 즉, A자료-1863年(癸亥) 74戶 247

13) 제주도지방의 호적중초를 활용한 연구로는 高昌錫, 『濟州道古文書研究』, 도서출판세림, 2002; 金東桢,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연구-- 大靜縣戶籍中草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동,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 제20호, 2005; 李成姪, “19세기 제주 大靜縣 邑治 거주민의 혼인양상--大靜縣衙中日記와 東城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第57輯; 김창민, “호적중초에 나타난 19세기 제주도가족과 가구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권2호, 2010 등.

14) “戶籍有二法 一是嚴法 一是寬法 嚴法者 一口 無漏於口簿 一戶 無落於戶籍 使無籍者 被殺而無檢 被劫而無訟 務得實數 東以嚴法者也 寬法者 口不必盡錄 戶不必盡括 里中 自有私匿 以攤徭賦 府中執其大綱 以知都總 務從均平馭以柔道者也 周禮司民之職 生齒以上 書於其板版 獻于天子 告于皇天 一毫無敢隱漏 此用嚴法者也” 『牧民心書』 戶典 戶籍條 참조.

15) 巨濟島 項里戶籍中草와는 달리 제주도지역의 호적중초는 호의 구성원들에 대해 매우 자세히 적고 있으며 그 구성원의 수가 호당 보통 9명을 전후하는 많은 수가 되고 있다. 濟州道 大靜縣 沙溪里호적중초 중에서 항리호적중초와 비슷한 시기의 기록내용을 일례로 설명한다. 1861년 호적중초는 78戶 829口(남380, 여449)로 나타나며, 1882년 중초는 102戶 877口(남410, 여467), 1891년 중초의 경우 104戶에 929口(남 418, 여511)로 나타난다. 호의 인구수가 대단히 많으며

口(男141, 女106),¹⁶⁾ B자료-1881年(辛巳) 68戶 212口(男126, 女86), C자료-1884年(甲申) 67戶 211口(男127, 女84), D자료-1887年(丁亥) 43戶 113口, E자료-1890年(庚寅) 44戶 122口, F자료-1893年(癸巳) 43戶 125口(男83, 女42)로 정리된다. 이는 호수인 父를 중심으로 그 배우자와 아들을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당시 거제도 향리 어촌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를 적으면서 합당한 역의 부담에 대해서 편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주도와 거제도가 어촌사회이고 섬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회가 갖는 사회운영의 독창성과 가족관계구성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일차적으로 실증성에 충실한 검토를 수행한 다음 가족실상을 구명하기 위한 진전된 2차 연구를 구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호적중초가 연속되는 자료인 것으로 인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며 혼인연령과 사망연령은 몇 세 정도인지를 추정해 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의 규모가 6~7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단독가구 또는 2~3명의 소규모 가구도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해 전후식년의 호적기록에서 나타나는 내용변화를 통해 변화의 원인과 변화실상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가족규모의 축소와 증가 등의 내용도 엄밀한 추적을 통해 검토가 가능하며, 사망과 관련하여서는 어촌사회에 來襲한 태풍으로 인한 선박침몰사고로 인한 사망 등이 다른 고문서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서 사망과 관련하여 호적기록이 명확하게 일치하는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¹⁷⁾

또한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많은 수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지역 가족구조의 특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자녀들이 혼인 후에도 일정의 가옥범위 내에서 생활은 분리하여 영위하지만 외관상 동일한 호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관념하는 가운데 한 개 호의 구성원으로 정리되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대하여는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 제20호, 2005; 김창민, “호적중초에 나타난 19세기 제주도가족과 가구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권2호, 2010 등 참조요.

16) 이 글의 서술과 관련하여 호적중초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기록방식에 대해 밝히둔다. 예를 들어 A-1-1로 표기하는 것은 A자료(1863年 癸亥)의 제1통 제1호를 줄여서 표기하는 것이 된다. B-1-1은 역시 B자료(1881年 辛巳)의 제1통 제1호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이 후 전개하는 글의 서술에서는 여기서 약속한 기호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17) 項里里任書目 今月初四日大風 本里李太必段兩船隻與船人十五名不知去處是遣 盧正良船一隻 盧松良船二隻內一隻 猪島金允五船姜必權一隻 文士益俠船 玉明浦朴大出船林出伊俠船 玉明浦

2. 巨濟島의 面里制變化와 舊助羅項里 戶籍中草의 關係

巨濟島 舊助羅 項里戶籍中草와 關係자료에 대해서는 ‘巨濟島 舊助羅里 古文書와 그 性格’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¹⁸⁾ 또한 ‘項里’ 洞名의 유래는 동리의 지형이 “源脈細若人項”으로 인하여 ‘項里’로 이름 하게 된 것이다.¹⁹⁾ 검토하는 호적중초자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조선시대 거제도 의 면리변경에 대해 설명한다. 즉, 조선시대 거제도는 영조(英祖) 45年(1769)때 방리(坊里) 개편으로 고현면 일운(古縣面 一運)에 남문(南門), 서문(西門), 사동(寺洞), 문동(門洞), 삼거리(三巨里)와 지세포(知世浦), 주림포(舟林浦), 항리(項里), 왜구미(倭仇味), 망치(望峙), 양화정(楊花亭) 등 11방(坊)을 두고 있다. 그러다가 고종(高宗) 26年(1889) 면리제(面里制) 개편으로 고현면(古縣面)을 일운(一運)과 이운면(二運面)으로 분리하였으며 장평(長坪), 연곡(淵谷), 서문(西門), 동문(東門), 용산(龍山), 문동(門洞), 삼거(三巨)와 소동(小洞), 주림(舟林), 대동(大洞), 회진(會珍), 교항(橋項), 선창(船倉), 와현(臥峴), 미조(彌助), 왜구(倭寇), 지심도(只心島), 조라도(助羅島), 항리(項里), 망치(望峙), 양화(楊花) 등 21리(里)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²⁰⁾

본 호적중초는 1863년 자료(이하에서 A자료로 표기함)를 시작으로, 두 번째 자료는 18년을 건너뛴 1881년자료(B)가 된다. 그 사이의 변화를 철저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특정인과 關係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정도로는 충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를 이은 세 번째

金俊業船 盧方事 船一隻 合九隻從風漂落片 破傷緣由事 辛巳(1881)八月初六日 里任 盧 (『古文書集成35--巨濟舊助羅里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8참조요).

18) 丁淳佑 安承俊, “巨濟島 舊助羅里 古文書와 그 性格”, 『古文書集成35--巨濟舊助羅里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8참조.

19) 項里居民等狀 右謹陳所志事段 矣徒等生居之地 源脈細若人項故 洞名即項里也.....丙子十一月日 (『古文書集成35--巨濟舊助羅里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8참조요); 그리고 舊助羅와 項里의 명칭에 대한 설명을 더 한다. “項里’는 ‘舊助羅’의 한문식 이름이다. 項里는 地形이 長鼓의 목(項)과 흡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명 舊助羅라고도 한다. 舊助羅라는 명칭은 옛 助羅城이 있었던 장소라는 뜻에서 연유되었으며, ‘助羅’는 ‘(목을)조르다’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借音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丁淳佑 安承俊, 위의 解題 참조.

20) 巨濟郡誌編纂委員會, 『巨濟郡誌』, 1963 참조. 아울러 高宗 26年(1889) 11月 12日 韓日通漁章程으로 日本漁民이 舊助羅와 知世浦에 117戶 688名이 移住하게 되면서 거제도 項里일원은 새로운 변화요인을 맞게 된다.

자료(1884년, C)부터 여섯 번째 자료(1893년, F)까지는 3년 간격으로 호적기록을 연속하고 있음으로 인해 기록을 통한 내용상의 변화를 비교적 일관되게 파악하고 추적·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즉, 巨濟島 ‘項里戶籍中草’는 다음 여섯 개 식년에 대한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1. A-1863년(癸亥) 74戶(15통4호) 247명(남 141명, 여106명)
2. B-1881년(辛巳) 68戶(14통3호) 212명(남 126명, 여86명)
3. C-1884년(甲申) 67戶(14통2호) 211명(남 127명, 여84명)
4. D-1887년(丁亥) 43戶(9통3호) 113명
5. E-1890년(庚寅) 44戶(9통4호) 122명
6. F-1893년(癸巳) 43戶(9통3호) 125명(남 83명, 여 42명)

우선하는 특기사항으로, 이 중에서 네 번째인 D자료부터 호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C자료의 67호에서 D자료는 갑자기 43호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촌락사회가 보이는 분동과 합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위에서 본 거제도 면리제의 변경과도 관련이 있게 된다. 결국 고종(高宗) 26年(1889) 면리제(面里制) 개편으로 인하여 영조 때의 동리보다 많은 동이 분동되거나 새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¹⁾ 특히 項里와의 관계에서 바로 인접하는 지심도(只心島), 조라도(助羅島)는 項里의 인구를 흡수하거나 분리시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21) 契房村과의 관계에서 분동과 합동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전들이 임의로 한 마을을 지목하여 계방촌으로 삼고 사사로이 부역이나 공전 등을 징수하여 착복하고 대신 그 마을의 신역을 면제해 주던 관행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부과되는 공전 및 부역등과 관련하여 동리 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관부에 호소하고 관부가 개입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으로 촌민들에게 가해지는 폐해가 심대하였다(『牧民心書』 第二部 律己六條中 淸心참조). 그리고 項里와 倭仇의 合洞과 分洞, 그리고 冬柏供上件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한다. 이하자료는 『古文書集成 35--巨濟舊助羅里篇』 자료집 項里里任書目資料 참조. 여기서의 戊申年은 1848년으로 추정된다. 項里里任書目 本里與倭仇合洞之時 供上冬柏二斗例納是如可 數十年前分洞之後 各其一斗式分當而本里段今年條一斗已爲當納 到今更抄 未知委折詳查勿侵之意 緣由事 戊申十二月 二十一日 里任.

Ⅲ. 巨濟島 舊助羅 ‘項里戶籍中草’에 나타나는 家族關係 분석

巨濟島 項里의 호적중초는 1860년대 이후 당시의 거제도 項里를 국가관리적 측면에서 호를 편제하여 기록하고 있는 자료이다. 국가는 백성들의 구체적 삶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기록하며 이를 기초로 국가 및 개인의 삶이 형평을 이루며 영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 국가관리를 도모한다. 국가는 호적제도를 통해 기본적으로 인구를 파악하고 부역과 국방의 기본자원을 산정하게 되며, 지역별로 인구의 이동에 대한 통제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관리에 있어 필수적 기본자료인 호적자료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기록내용상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호적자료를 포함하여 역사의 내용을 적고 있는 특정사료가 당해 사회의 실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정짓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대한 밀착자료가 있다면 일차적으로 그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해내는 검토는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다. 본 자료 역시 거제도 項里라는 특정지역에서 연속하여 기록하고 있는 호적중초자료이다. 따라서 項里 호적중초는 거제도 지역의 사회적·가족적·국가적 의미를 특별하게 담고 있다. 본 검토는 그에 대한 이해를 소박하게 이루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는 이해 정도와 분석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족보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방대하게 추적해내어야 하는 확대연구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혼인을 통한 지방사회의 씨족적 연계, 지방사회의 사실상 지배관계 및 지배력의 원천에 대한 이해, 가족관계의 형성과 특정가족의 興亡盛衰에 대한 시간적 변화 및 변화요인, 생존기간 및 연령에 따른 가족내적 또는 사회관계에 있어 역할수입, 가족규모와 가족의 계승 및 분화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과제가 복잡다양하게 존재한다.²²⁾

22) 호적자료를 이용한 가족관계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에서 개최한 『동아시아와 유럽의 결혼과 가족』(2007년2월) 자료집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에는 “조선후기 입양과 가계계승양상”(권내현), “조선후기 無姓層의 有姓化과정에 대한 분석”(김경란), “18세기 농촌의 결혼양상”(김건태), “조선시대 양반의 혼인과 출산”(박희진), “조선후기 상속과 가족

그러나 본고에서는 항리호적중초를 통해 파악되는 일차적 가족관련 내용을 분석 검토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보다 확장된 검토는 별도의 자료와 연구방법에 의존하여야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논의를 배제한다. 즉, 검토대상자료인 巨濟島 項里戶籍中草가 담고 있는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내는 것으로, 엄격하게는 당시의 가족관계 실상을 추적함에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項里戶籍中草에 기초한 가족관계에 대한 검토를 더하고자하는 연구의의를 밝히면서 가족관계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1. 婚姻과 養子

<1> 혼인연령의 추정

혼인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시작이 된다. 따라서 혼인을 몇 살 정도에 하게 되는지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1863년에 작성된 A자료를 기초로 혼인연령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호적중초에서 혼인연령의 추정은 ①1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그 나이만큼을 역산하여 혼인연령을 추정하는 방법과 ②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는 당해 호적중초에 기록된 나이를 바로 혼인시점으로 보고 혼인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한다.²³⁾ 앞서서도 밝히고 있듯이, 여기서의 혼인연령 추정은 어디까지나 項里戶籍中草를 통해서 보고자하는 당시의 혼인연령에 대한 한 이해에 불과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A자료(1863년 호적중초)에서 검토대상이 된 42건 중 10대혼인의 경우에 대해 설명 한다. A-7-5의 業武助羅射夫姜道林의 1子姜尙仁年32과 婦金氏

형태의 변화”(손명규) 등의 주제가 각각 논구되고 있다.

23) 혼인연령의 추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한다. 즉, (A-1동2호) 助羅射夫姜道允年38(남)-妻孫姓年39(여)-(1자)德仁年12-- 혼인연령추정 26(남)-27(여)세(이하 같은 방식에 의함); (A-1-3) 忠義處辰權 58-妻李氏齡49-1자 尙良29--29-20세, 尙良29-婦姜氏齡29-1자 瓚律7--22-22세; (A-1-5) 業武助羅射夫姜道敬 51-妻鄭姓年51-1자 權伊26(2자 煥伊)--25-25세, 1자 權伊26-婦朴氏齡27--26-27세; (A-2-2) 業武助羅射夫姜晉翁 65-妻賓姓年60-1자 助羅鎮屬 鶴雲27--38-33세, 助羅鎮屬 鶴雲27-婦洪氏年25--27-25세 등의 방식으로 산출하게 된 것으로 A자료의 혼인연령을 추산하게 된 것이다. 혼인연령추산 전체 자료 제시는 생략함.

齡37사이에 1子良俊年16세를 둔 姜尙仁부부의 혼인 연령은 16세(남)와-21세(여)로 나타난다. 또한 (A-11-1) 皇朝人朴千金故代子邑軍官聖象24-妻黃姓年31--1자 用煥10의 경우에는 朴聖象부부가 14세와 21세(여)에 혼인한 것이 되어, 여성이 연상으로 나타난다.

부부 중 한 쪽이 10대인 혼인의 경우는 위의 예를 포함하여 전체 5건으로써, A-5-2: 18세(남)-23세(여), A-7-5: 16-21세, A-9-4: 18-19세, A-11-1: 14-21세, A-11-4: 18-19세로 나타난다. 10대 혼인의 경우 여성이 전부 연상인 특징이 있다.

② 10대에 혼인을 하게 되는 남성의 경우 父의 직역은 忠義盧光玉(A-5-2), 業武助羅射夫姜道林(A-7-5), 幼學病人李德春(A-9-4), 皇朝人朴千金(A-11-1), 業武張道權<1자 鄉廳屬 己煥>(A-11-4)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0대 남성이 연상의 여성과 혼인을 함에는 남성의 父의 직역 또는 세력에 기한 당시 僻地漁村 項里지역의 특성이 가미된 혼인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부부모두 20대 혼인은 42건 중 22쌍이 된다. 그 중 6쌍은 여성이 연상(1세~5세)이며, 10쌍은 동갑으로 나타난다.

<2> 同姓婚

姓을 함께하는 남녀 간의 혼인에 대해서도 조선사회는 법률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²⁴⁾ 하물며 本貫까지가 같은 경우라면 혼인은 더더욱 용인될 수 없었을 것임을 추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삶의 실제에 있어서 제도가 同姓 또는 同姓同本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혼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된다. 당시 사회가 지향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혼인이 담고 있는 의미와 특수성을 충실히 이해하면서 존재 가능한 혼인실상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24) 『大明律』戶律 婚姻條 “凡同姓爲婚者 各杖六十離異”；『續大典』禮典 婚嫁條 “鄉貫雖異 姓字若同則毋得婚娶”.

된다.²⁵⁾

따라서 項里戶籍에서 나타나는 당시 項里의 同姓婚은 다음의 네 사례가 발견된다.

1) 사례1

A-5-5 業武知世射夫朴性權年63 妻朴氏年63--率3자 知世軍官奇柱年24

B-5-3 業武知世射夫朴琪柱年42 母朴氏年81 妻李姓年47 率2子良宇9

위 A자료에서 業武知世射夫朴性權(年63) 妻朴氏(年63)가 동성부부로 나타난다. B자료는 A자료 이후의 호 승계를 적고 있다.

2) 사례2

B-7-3: 業武烽燧軍朴學律年33 母朴氏年58 妻鄭姓年27

이 자료는 戶首인 아들 朴學律(年33)과 母 朴氏(年58)이 同姓으로써, 朴學律의 父와 母가 같은 朴氏로 同姓婚姻을 한 것이 된다.

3) 사례3

B-13-4 幼學李英俊年62- 妻李氏齡47(夫婦가 同姓)

C-13-4: 幼學李永俊故代子同完年24 母李氏齡50

이 자료는 幼學李英俊이 역시 李氏와 혼인한 사례가 된다. 3년 후 호적증초에서 이영준의 사망(62~65세)으로 아들 同完(年24)이 호를 승계하면서 모와 함께 한 호를 구성하고 있다.²⁶⁾

4) 사례4

D-3-1: 業武府櫓軍金之姓年32 妻金姓年35

25)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李鍾吉, “同姓同本禁婚規定의 改正을 위한 基礎課題의 검토”, 『가족법연구』 제12호, 1998. 참조요.

26) B자료에서 호수 '李英俊'이 C자료에서 '李永俊'으로, 이름자 '英'이 '永'으로 바뀌어 있으며 B와 C자료에서 모두 13통4호로 같은 통호수가 되고 있다. 특기할 것은 3년전 호적에서는 전혀 없던 아들 同完이 무려 24세의 나이로 3년 후에 나타나 父의 사망을 원인으로 호를 승계하고 있다.

<3> 養子

家を 승계할 後嗣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친족범위 내에 있는 同姓의 인원 중에서 行列을 고려하여 養子로 入養하였다. 다음의 사례를 참고한다.

1) 사례1

A-11-3: 業武永登射夫張權必年33 母鄭姓年75 妻盧氏年37

B-10-4: 業武永登射夫張權必51 妻盧氏年45 率同姓養子能宗年36

C-10-4 業武永登射夫張權必故代養子能宗年39 母盧氏年45(48?) 妻金姓年30

D-7-1: <통수> 業武張能宗年42 母盧氏年58 妻金姓年33

위의 A자료에서 業武永登射夫張權必 부부는 75세인 모와 함께 호를 구성하고 있다. 18년 후 B자료에서는 同姓養子能宗(年36)이 張權必 부부와 함께 호에 올라있다. 그런 3년 후 C자료에는 호수였던 張權必이 사망(51~54세)함으로써 同姓養子能宗이 호수가 되어 호를 승계하게 되었으며 그의 妻 金姓(年30)이 함께 등재된다.

결국 張權必은 후사가 없음으로 인하여 同姓인 能宗을 양자로 입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E와 F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사례2

A-10-5 幼學孫有卜年33 母孔氏齡56 妻千氏年29

B-10-1 幼學孫有腹年51 母孔氏齡70 妻千氏齡47

C-10-1 幼學孫有腹年54 妻千氏齡50(*母孔氏 사망 70~73세 추정)

D-6-4 幼學孫有卜故代妻千氏齡53

E-6-4 千氏故代養子幼學孫之亨年22 妻金氏齡22

F-6-3 幼學孫智斗年25 妻金氏齡25

위의 사례는 幼學孫有卜이 호를 이어오다가 D자료에서 호수인 孫有腹의 사망(54~57세)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는 妻인 千氏(齡53)가 단독으로 호를 승

계하게 된다. 그런 다음 E자료에서 妻인 千氏마저 사망(53~56세)하게 되자 養子幼學孫之琿(年22)이 幼學孫有卜의 호를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D와 E의 기록으로 보아서는 幼學孫有卜의 死後에 養子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진다.

F자료에서는 호를 승계한 양자 孫之琿(지돌)이라는 이름을 孫智斗(지두)로 改名하여 項里에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2. 戶의 構成 類型

<1> 大家族戶

(1) 가족관계분화 : 사례1

A-5-2 忠義盧光玉故代子國良年37 妻金氏齡42 率同生弟正良年25 1子芳律年19 2子丙律年6

B-4-5: 忠義盧國良年55 妻金氏齡60 率同生弟正良年43 弟嫂徐氏齡43 1子芳律年37 婦金氏齡38 2子炳律年24 孫1子斗辰年15/

<C-4-5>: 忠義盧國良年58 妻金氏齡62 率同生弟正良年46 弟嫂徐氏齡46 率1子芳律年40 婦金氏齡41 2子秉律年27 孫1子斗辰年18/

<D-3-4>: 忠義盧國良故代妻金氏齡66 率2孫斗吉年18

E-3-4 金氏老代孫忠義盧斗吉年21 祖母金氏齡69 率同生弟斗龍年14 4寸同生弟洛龍年9

F-3-4 忠義盧斗吉年24 祖母金氏齡72 率同生弟斗用年17 4寸同生弟洛龍年12로 이어짐.

① A에서 忠義盧光玉의 사망으로 아들인 國良(年37)이 妻金氏(齡42)와 同生弟正良(年25), 1子芳律(年19) 2子丙律(年6)까지 5명으로 호를 구성한다.

② 18년후인 B자료에서 忠義盧國良(年55)과 妻金氏齡60, 그리고 同生弟正良(年43)과 弟嫂徐氏(齡43), 호수인 國良의 1子芳律(年37)과 婦金氏(齡38), 2子炳律(年24), 1자 芳律의 자인 孫1子斗辰(年15)까지 8명의 대호를 이루게 되며, C자료까지 이어진다.

③ D자료에서는 호수인 忠義盧國良의 사망(58~61세)으로 妻金氏(齡66)가 호를 승계하면서 다른 구성원들이 모두 탈락되면서 芳律의 2자로 보이는 2孫斗吉(年18)만이 호의 구성원으로 남아 전체 2명으로 호를 이룬다.²⁷⁾

④ 그리고 위의 C-4-5의 盧國良의 同生弟 正良은 다음의 D자료(D-1-2 忠義盧正良年49 率1子京律年21)에서와 같이 별도 호를 구성하여 독립하고 있다.

결국 盧國良의 동생 盧正良은 D에서 1자京律과 함께 별도 호를 편성한 다.²⁸⁾ 이때 21세인 1子京律이 처음 등재된다. 또한 위의 C-4-5에서 기록된 盧正良의 妻 徐氏는 탈락된 것으로 보아서 사망한 것으로(46~49세로 사망 추정)추정된다.

(2) 가족관계분화 : 사례2

A-7-5: 業武助羅射夫姜道林年42 妻宋氏齡42--率1子祥仁年14 2子鳳仁年12

B-7-2: 幼學姜道林年60 妻宋氏齡60--率1子尙仁年32 婦金氏齡37 2子鳳仁年30 婦潘氏齡28 3子志仁年28 孫1子良俊年16/

C-7-2: 幼學姜道林年63 妻宋氏齡63--率1子尙仁年35 婦金氏齡40 2子奉仁年33 婦潘氏齡31 3子志仁年31 孫1子良俊年18

D-4-5: 幼學姜道林年66 妻宋氏齡66 婦金氏齡43 率2子鳳仁年36 3子志仁年34 婦金氏齡33 孫1子良俊年21

E-4-5 幼學姜道林年69 妻宋氏齡69 婦金氏齡46 率2子鳳仁年39 3子志仁年37 婦金氏齡35 孫1子良俊年24 孫2子花俊年22

F-4-5: *嘉善大夫兼五衛將姜應浩72 妻宋氏齡72 婦金氏齡49 率2子鳳仁年42 3子志仁年39 婦金氏齡38 孫1子良俊年27 孫2子華俊年25 孫3子吉俊年12

① 위의 姜道林 戶는 巨濟島 項里에서 직역과 가세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대가족호를 이루어낸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A자료에서 業武助羅射夫姜道林(年42)은 처와 두 아들과 같이 4명으로 호를 이루고 있다.

② 그러나 18년 후인 B자료에서는 姜道林은 幼學으로 변경되면서 처와 함께 두 아들과 두 며느리, 그리고 3자 志仁(年28)²⁹⁾과 孫1子良俊(年16)을 합하

27) 이와 관련한 의문점으로, 전혀 새로운 2孫 斗吉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왜 盧國良의 妻 金氏齡62는 손자중에서도 2孫斗吉과 호를 이루고 있는가. 많은 가족들 어떻게 되었는가. 즉, 子 芳律과 그의 妻 金氏, 2자秉律, 孫1子斗辰1손은 어떻게 되었는지 불명하다.

28) 그 후 忠義盧正良의 호는 E와 F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E-1-2忠義盧正良年52 率1子京律年24 婦張氏齡26/ F-1-2 忠義盧正良年55 率1子敬律年27 婦張氏齡29로 이어짐.

29) 3자 志仁(年28)은 18년 전의 A자료에서는 없었으나 18년 후에는 28세의 나이로 기록되어 나타

여 8명의 대호를 구성한다. C자료에서 그대로 연결된다.

③ D자료에서는 호수 姜道林의 1子 尙仁은 탈락되고 尙仁의 婦 金氏(齡43)와 姜道林의 孫1子 良俊年21이 戶에 같이 남아있다. 결국 1子 尙仁은 사망(35~38세)으로 추정된다. 또한 2子 奉仁의 婦 潘氏도 탈락되고 있는 것으로, 奉仁의 婦 潘氏의 탈락 역시 사망(31~34세)으로 추정된다. 반면 3子 志仁의 婦 金氏(齡33)가 새롭게 등재되고 있다.³⁰⁾ 7명의 대호가 된다.

④ E자료에서는 호수 姜道林의 孫2子 花俊(年22)이 새로 등재되어 나타난다.³¹⁾ 따라서 다시 8명의 대호를 구성한다.

⑤ F자료에서 큰 변화가 발견된다. 호수인 幼學 姜道林은 F자료에서 직역을 嘉善大夫兼五衛將姜應浩(72)로 변경하게 된다. 직역을 嘉善大夫兼五衛將으로, 이름은 姜應浩로 改名하게 된다.³²⁾ 項里戶籍中草에서 嘉善大夫는 유일하다.³³⁾ 그리고 孫3子 吉俊(年12)이 새롭게 호적에 등재됨으로써 전체 구성원 9명의 대호가 된다.

(3) 가족관계분화 : 사례3

A-9-4 幼學*病人李德春年41 母李氏年65 妻盧氏年42 率2子應連年23

B-9-1: 幼學李德春年64 妻盧氏齡64--率2子應連年41 婦張氏齡42 孫1子在善年15

난다.

30) D자료에서 3子 志仁의 婦 金氏(齡33)가 비교적 많은 33세의 나이로 처음 등재되고 있다.

31) E자료에서 호수 姜道林의 孫2子 花俊(年22) 역시 22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 호적에 처음으로 등재되어 나타난다. 이어서 F자료에서는 孫3子 吉俊(年12)이 12살에 처음 등재된다. 項里戶籍의 다른 부분에서도 적지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많은 연령으로 호적에 처음 등재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32) 改名과 관련하여 A-8-3: 忠義盧惡大改名 基良年32 母梁氏齡61 妻李氏齡26에서와 같이 改名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처럼 호적작성과정에 동일인으로 확인 가능한 정도에서 인용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33) 어촌사회에서 이루어진 空名帖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미조항리 草溪崔氏호적자료에서 발견되는 通政大夫(正三品 堂上)와 관련한 자료를 참고로 제시한다. 1) 1774년 호적에서 戶首 蹇脚 崔泰允(年68)의 曾祖 春立에 대해 老職通政으로 기록 2) 1837년 호적에서 戶首 崔得宗(年63)이 通政大夫 僉知中樞府事로 기록되는 사례가 있다. 특히 1837년 호적에서 적고 있는 崔得宗의 通政大夫는 道光十二年(1832)에 발급받은 教旨를 통해 品階受與 경과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崔得宗이 '北漢行宮修理效勞'로 인하여 通政大夫教旨를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이전 호적(1831년)에서 戶首 崔得宗(年57)은 직역이 단순히 幼學으로 기록되고 있다. 경상남도 섬지역 어촌사회에서 通政大夫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사례로 생각된다.

C-9-1: 幼學李德春年67 妻盧氏齡67--率1子應連年44 婦張氏齡45 孫1子在先年18 2子進善年9

D-6-1: 李德春故代孫*病人在先年21 祖母盧氏齡70 妻白氏齡24 率同生弟進善年12

E-6-1 幼學李在先年24 祖母盧氏齡73 妻白氏齡27 率同生弟進善年15

F-6-1 幼學李在先年27 祖母盧氏齡76 妻白氏齡30 率同生弟進善年18

① A자료에서 幼學病人李德春(年41)은 母와 妻 및 2子應連(年23)과 함께 한 호를 구성한다.

② 18년 후인 B자료에서 幼學李德春(年41)은 妻와 2子の 婦 張氏(齡42)와 孫1子在善(年15)등의 5인으로 한 호를 구성한다.

③ C자료에서는 위의 구성원에 孫2子進善(年9)이 더해져 6명이 된다. 孫2子인 進善이 9살에 처음으로 등재된다.

④ D자료에서 幼學李德春이 사망(67~70세)후 孫1子인 病人在先21을 戶首로 하여, 祖母와 在先의 妻 및 동생인 孫2子 進善이 함께 호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호를 승계한 在先의 부모인 應連과 張氏가 탈락하고 있다. 이들의 탈락은 사망으로 추정된다. 특기할 것으로, A와 D자료에서 각각 幼學病人李德春과 李德春故代孫病人在先으로 나타나는 <病人>을 주목하게 된다.³⁴⁾ E와 F자료에서 幼學李在先이 戶首로서 祖母를 모시고 妻 및 同生과 함께 호를 지속하고 있다.

(4) 가족관계분화 : 사례4

B-14-1: 幼學文必成年62 妻朴氏齡61--率同生弟必得年55 弟嫂李氏齡51 同生弟必權年45 弟嫂柳氏齡34 1子應奎年23 婦姜氏齡27

C-14-1: 幼學文必誠年65 妻朴氏齡64 率同生弟必得年58 弟嫂李氏齡54 同生弟必權年48 弟嫂柳氏齡37 1子應奎26 婦姜氏齡30

D-9-2: 幼學文弼誠故代子應奎年29 母朴氏齡67 妻姜氏齡33

34) <病人>은 단순한 환자의 뜻보다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내지 의사의 의미로 사료된다. <病人>으로 적고있는 幼學李德春은 이후 생존기간이 길게 나타나며, D자료에서 病人在先역시 E와 F자료에서 幼學李在先으로하여 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의업의 세습성에 비추어볼 때 項里지역에서 의업을 승계하는 호가 아닐까 생각한다.

① B자료에서 戶首 幼學文必成(年62)은 妻와 두 동생 必得(年55)과 必權(年45) 부부, 그리고 1子應奎(年23) 부부와 함께한 8명이 한 호를 구성하고 있다. C자료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② D자료에서 호수였던 幼學文彌誠이 사망(65~68세)하면서 1子인 應奎(年29)가 호를 승계하여 母와 妻만 같은 호에 함께한다. 따라서 C에서 함께하였던 應奎의 삼촌 必得(年55)과 必權(年45) 부부는 탈락되어 사라진다.

③ E와 F자료에서 文氏戶는 보이지 않음.

(5) 가족관계분화 : 사례5

가족의 분화과정을 추적하는 사례로 호수의 아들과 동생이 따로 별호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래 A자료에서 戶首 忠義盧昌植(年39)의 1子 松林(年17)과 同生弟亮植(年24)의 경우에 대한 검토로써, B자료에서부터는 1子松林과 同生弟亮植이 각각 별도의 호를 이루어 계속 이어가고 있다.

[A-4-5 忠義盧昌植年39 妻李氏齡42 a.率同生弟亮植年24 b.率1子松林年17]

1) 戶首의 1子의 호 승계

위의 A-4-5에서 나오는 忠義盧昌植의 b.1子松林年17에 대하여 18년 후의 B자료부터 검토한다.

B-4-4 b.忠義盧松林35-妻孔氏齡36- 率同生弟正林年27 同生2弟鶴林年21

C-4-4 忠義盧松林38-妻孔氏齡39- 率同生弟正林年30 弟嫂李氏齡30 同生2弟鶴林年24

D-3-3 忠義盧松林41-妻孔氏齡42- 率同生弟正林年33 弟嫂李氏齡33 同生2弟學林年27 弟嫂尹氏齡27

E-3-3 忠義盧松林44-妻孔氏齡45- 率同生弟正林年36 弟嫂李氏齡36 同生2弟鶴林年30 弟嫂尹氏齡30 率1子祥憲年11

F-3-3 忠義盧松林47-妻孔氏齡48- 率同生弟正林年39 弟嫂李氏齡39 同生2弟鶴林年33 弟嫂尹氏齡33 率1子祥憲年14

① B자료에서 호수가 된 忠義盧松林(年35)은 妻와 두 동생 正林(年27)과

2弟鶴林(年21)과 함께한 4명이 호를 구성한다.

② C자료에서 첫째동생 正林(年30)이 혼인하여 弟嫂李氏(齡30)가 함께 등재됨으로써 5명이 된다.

③ D자료에서 둘째동생 鶴林(年27)이 역시 혼인하여 弟嫂尹氏(齡27)가 함께 등재됨으로써 6명이 된다.

④ E자료에서 호수 忠義盧松林의 1子祥憲(年11)이 처음으로 등재됨으로써 7명이 된다.³⁵⁾ F자료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2) 戶首 同生弟의 별도호 구성과 그의 승계

위의 A-4-5에서 나오는 忠義盧昌植의 <a.率同生弟亮植年24>에 대해 18년 이후의 B자료상의 기록으로부터 검토한다.

B-2-2 忠義盧亮植年42 妻金氏齡40 率1子松學年21

C-2-2 忠義盧亮植45-妻金氏齡43--1자松鶴年24 2자正壽年10

D-2-2 忠義盧亮植48-妻金氏齡46--1자松鶴年27 2자正壽年13

E-2-2 忠義盧亮植51-妻金氏齡49--1자松鶴年30 2자正守年16

F-2-2 忠義盧亮植54-妻金氏齡52--1자松鶴年33 2자正守年19

① A자료상의 호수 忠義盧昌植의 同生弟亮植은 B자료에서 별도호의 호수(忠義盧亮植(年42)가 되어 妻와 1子松學(年21)과 3명으로 호를 구성한다.

② C자료에서 2子正壽(年10)가 처음으로 등재되어 4명으로 호를 구성한다.³⁶⁾ 그런 다음 D·E·F자료에서 4명의 호는 계속되고 있다.

(6) 가족관계분화 : 사례6

A-1-3 忠義盧辰權年58 妻李氏齡49 率1子尙良年29 婦姜氏齡29 孫1子瓚律年7

B-1-3 忠義盧尙良年46 妻姜氏齡47 率1子贊律年25 婦金氏齡23 2子晋律年17

C-1-3 忠義盧尙良年49 妻姜氏齡50 率1子瓚律年28 婦金氏齡26 2子在律年20

D-1-3 忠義盧尙良年52 妻姜氏齡53 率1子贊律年31 婦金氏齡29 2子再律年23

E-1-3 忠義盧尙良年55 妻姜氏齡56 率1子瓚律年34 婦金氏齡32 2子再律年26

35) 戶首 忠義盧松林의 1子祥憲(年11)이 처음으로 등재되는데, 祥憲의 나이가 11살이다.

36) 戶首 忠義盧亮植 2子正壽(年10)가 처음으로 등재되는데, 正壽의 나이는 10살이다.

F-1-3 忠義盧尙良年58 妻姜氏齡59 率1子瓚律年37 婦金氏齡35 2子在律年29

① 위의 사례는 A자료에서 호수였던 忠義盧辰權의 사망으로 B자료에서 1子尙良이 호를 승계하여 그 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된다. A자료에 의하면 1子尙良(年29)과 婦姜氏(齡29)사이에 孫1子瓚律(年7)이 있다. 즉, 1子尙良 부부는 22세에 瓚律을 낳고 있다.

② B자료에 의하면 忠義盧尙良(年46)과 妻 姜氏(齡47)사이에 1자와 2자가 있고, 1자의 혼인으로 자부를 맞아 2자와 함께 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1子瓚律부부는 나이가 30이 넘어감에도 전혀 자녀가 등재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7) 기타

1) 사례1

A-11-2: 璿源參奉盧道淳年73 妻李氏齡67--率3子正植年41 婦姜氏齡36 4子成植年35 5子恒植年24--率孫1子忠良年10

B-10-3: 忠義盧廷植年59 妻姜氏齡54--率1子忠良年28 婦金氏齡24

C-10-3: 忠義盧廷植年62 妻姜氏齡59--率1子忠良年31 婦金氏齡27

① A자료에서 璿源參奉盧道淳(年73)은 3자正植(年41)부부와 4자 成植(年35)부부와 5자 恒植(年24), 그리고 孫1子 忠良(年10)등 모두 7명이 한 호를 이루고 있다. 1자와 2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② 18년 후 B자료에서 前戶首 璿源參奉盧道淳 사망 후 이 호를 이어가는 자는 제3子 廷植(年59)이며, 구성원은 妻姜氏(齡54)와 1자 忠良(年28) 및 그 妻 金氏(齡24)이다. C자료까지 동일하게 이어지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2) 사례2

A-14-2: 忠瓚知世軍官夫方伊年57 後妻金氏年43--率前妻2女年21³⁷⁾ 3子知世鎮屬大川

37) 項里 호적중초에서 딸(前妻2女年21)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年18 4子知世士兵大準年13 後妻1子知世士兵極川年7³⁸⁾

B-12-3: 忠贊知世軍官夫方伊故代子大俊年31 繼母金姓年61--率同生弟克千年25

C-12-3: 忠贊知世鎮軍官夫大俊年34 繼母金姓年64 率同生弟克川年28

D-8-3: 忠贊知世鎮軍官夫大俊年37 母金姓年66 率同生弟克川年31 同生2弟贊伊年20

E-8-3: 忠贊知世鎮軍官夫大俊年40 繼母金姓年69 率同生弟克川年34 同生贊伊年23

F-8-2: 忠贊知世鎮軍官夫大俊年43 繼母金姓年72 率同生弟克川年37 同生贊伊年26

① A자료에서 戶首 忠贊知世軍官夫方伊(年57)는 後妻인 金氏(年43)와 前妻의 자녀 3명(제2녀 年21, 제3子 知世鎮屬大川年18, 제4子知世士兵大準年13) 및 현재의 後妻가 낳은 1子 知世士兵極川(年7)까지 모두 6명이 한 호를 이루고 있다.

② 18년후 B자료에서 호수였던 忠贊知世軍官夫方伊가 사망(72-75세)으로 제4자인大俊(年31)이 호를 승계한다. 그러면서 繼母金姓(年61)과 계모가 낳은 아들인 異腹同生克千(年25)을 한 호에 등재한다. 다른 구성원들은 행방을 알 수 없다. C자료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③ D자료에서 戶首인 夫大俊(年37)의 호에 繼母의 두 번째 아들인 克川의 同生2弟贊伊(年20)가 처음으로 호적에 등재된다. 父인 夫方伊가 사망한지 6년이 지난 다음, 계모가 낳은 제2자贊伊가 2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등재되고 있다. 그 이후 F자료까지 夫大俊을 호수로 계모와 그의 두 아들이 함께하는 4명의 호가 계속된다.

38) 職役과 관련하여 특기할 내용을 아울러 지적한다. 본 호적중초기록에서 '後妻1子知世士兵極川(年7)'으로 적고 있는 것에 대해, 불과 7살의 나이로 知世士兵의 직역을 부여받고 있다. 사실상의 직역수행과 직역부여를 통한 역부담은 별개의 것이 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리호적중초에서 어린 연령의 자녀가 직역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산견되고 있는 바, 이는 바로 사실상 직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직역에 기한 일정의 역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기할 것은 幼學이나 忠義 등의 직역은 어린자녀의 경우 직역을 기록하지 않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실례로 C-9-1: 幼學李德春年67 妻盧氏齡67--率1子應連年44 婦張氏齡45 孫1子在先年18 2子進善年9(2子進善年9 처음등제) 및 F-4-2: 忠義盧德良年54 妻梁氏齡50 率1子正彦年6 등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관련하여 아래자료는 牧子인 父를 따라 아들 세 명이 모두 목자이며 16살의 4子까지 모두 牧子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부언한다. A-15-2: 業武牧子金水元年61 妻李姓年52--率1子牧戒仁年26 3子牧戒出年19 4子牧戒準年16. 그 후 B-13-3 :牧子金啓出年36 母李姓年70 妻張姓年29 ;C-13-3 :牧子金季出年39 母李姓年73 妻張姓年32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결국 B와 C자료를 통해 제3子(戒出= 啓出= 季出)만이 父인 業武牧子金水元의 뒤를 이어 계속 牧子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례3

A-14-4 幼學金興福年93 妻茶氏齡75--率6子聖允年41 婦姜氏年41--孫1子繼贊年19 2子繼俊年13

B-12-5: 幼學金聖潤年59--率1子啓瓚年37 婦朴氏齡38 2子啓中年31

C-12-5: 幼學金聖潤年62 率1子季贊年40 婦朴氏齡42 2子季中年34/

D-8-4: 幼學金聖潤年65 率1子季贊年43 婦朴氏齡45 2子季中年37

E-8-4: 幼學金聖潤年68 率1子季贊年46 婦朴氏齡48 2子季俊年40

F-8-3: 幼學金聖潤年71 率1子啓瓚年49 婦朴氏齡51 2子啓仲年43

① 본 戶는 幼學金興福(年93)이 妻茶氏(齡75)와 제6子 聖允(年41) 부부 및 두 손자(繼贊年19, 繼俊年13)와 함께 모두 6명의 구성원으로 호를 이루고 있다. 幼學金興福은 93세로써 項里호적중초 전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호수로 파악된다. 妻茶氏(齡75)와는 18세의 연령차가 있다. 아마도 後妻가 아닐까 생각된다.

② 18년후인 B자료에서 幼學金興福 부부는 사망하고 A자료에서 호를 함께 하던 제6子 幼學金聖潤(年59)이 호를 승계하고있는 것으로, 幼學金聖潤의 妻姜氏도 없는 가운데 1子啓瓚(年37) 부부와 2子啓中(年31)과 함께 호를 구성한다. 이러한 호는 C·D·E·F자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F자료를 볼 때, 연령이 많아짐에도 1자부부(1子啓瓚年49 婦朴氏齡51)의 자녀도 없고, 2자인 2子啓仲(年43)역시 혼인도 하지 않은 채로 호적상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³⁹⁾ 이러한 부분들이 호적중초 기록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2> 형제·남매호

아래의 사례들은 부모가 없는 가운데 형제 또는 남매가 한 호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적고 있다.

39) 호적중초의 기록상 특히 이름과 연령에 있어 차이 내지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동일인을 파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임을 지적한다.

1) 사례1

A-10-1 業武防軍崔連主²⁰⁴⁰⁾ 母金姓年62 率同生妹年20

同生妹年20동생 매와 나이가 동갑이다. 쌍둥이 남매로 오빠가 戶首인 듯함

B-9-3: 業武府櫓軍崔連柱年38 後妻金氏年27

C-9-3: <統首>業武崔連柱年41 後妻金氏年31

① A자료에서 호수인 業武防軍崔連主(年20)는 同生妹(年20)와 나이가 동갑이다.

쌍둥이 남매로 오빠가 戶首이며 모와 함께 한 호를 이루고 있다.

② 18년후인 B자료와 그 3년후인 C자료에서 業武府櫓軍崔連柱는 혼자서 後妻와 함께 호를 이루고 있다.

2) 사례2

B-3-1 幼學張百年17 率同生弟千年15

C-3-1 幼學張百年20 率同生弟千年18

D-2-5 幼學張百年23 率同生弟千年22

E-2-5 幼學張百年27 率同生弟千年25

F-2-5 幼學張百年30 率同生弟千年28

① B자료에서 17세의 幼學張百이 戶首로서 15세의 동생 張千과 함께 호를 이루기 시작하여 F자료까지 지속되고 있다.

② 특이한 것으로 C자료에서 幼學張百은 20세로써 統首가 되었다가, D자료에서 통수에서 탈락되고 있다.

3) 사례3

B-9-5: 業武助羅射夫姜余俊年39 妻李姓年39 率同生弟又完年33

40) 崔連主와 관련하여서는 己酉年(1849)十月十三日에 작성된 項里里任書目을 참고한다. “昨年八月大探時府櫓軍吳致孫白骨代崔連柱填代例給情錢二兩昨年該色處即給捧標文矣 到今三月軍點時反呼白骨吳致孫故 右由文報 題音內詳考厘正向事教是故 信之無疑同致孫代崔連柱填名磨勘情錢更爲抄出是乎乃 昨年色吏處給情錢再懲冤枉仍于 標文與小帖前呈 并以緣由事 己酉十月十三日里任 姜”으로 하여 이를 바로 잡고 있다. 崔連柱의 己酉年 당시 나이는 6살에 불과하다. 『古文書集成三十五--巨濟舊助羅里篇』 520면 참조요.

C-9-5: 業武助羅射夫姜余俊年42 率同生弟又完年36

D-6-3: 助羅鎮射夫姜汝俊年45 率同生弟又完年39

① B자료에서 業武助羅射夫姜余俊(年39)은 妻와 동생又完(年33)과 함께 호를 구성한다.

② C자료에서 호수 姜余俊의 처는 탈락되고 동생又完과 둘이서만 호를 구성한다. 그런 다음 D자료에도 계속된다. 姜余俊의 妻李는 사망(39-42세) 인듯하다.

4) 사례4

B-4-4: 忠義盧松林年35 妻孔氏齡36 率同生弟正林年27 同生弟學林年21

C-4-4: 忠義盧松林年38 妻孔氏齡39 率同生弟正林年30 弟嫂李氏齡30 同生2弟鶴林年24

① B자료에서 忠義盧松林(年35)은 처와 두 동생과 함께 호를 구성한다.⁴¹⁾

② C자료에서는 B의 구성원에 더하여 큰 동생의 부인 弟嫂李氏(齡30)가 새롭게 등재되면서 함께 호를 이루고 있다.

<3> 夫婦戶

혼인을 하면 자녀가 탄생되고 따라서 호의 구성원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이겠으나, 여기서는 이러한 일반적 모습이 아닌 것으로 부부 둘 만으로 호를 구성하는 사례에 대해 A·B·C·D자료에 대해 검토한다.

1) A자료에 대하여 : ① A호적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전체 74호중 11호가 부부호이다(11/74호). ② A자료에서 기재된 호수의 연령은 30대(최저 33세, 業武邑將官邊萬出)에서 50대(최고 55세, 幼學金禹哲)까지 분포한다.

③ A자료상의 부부호는 연령에 있어 호수인 남편의 연령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1) 경우에 따라서는 사촌동생과 함께 호를 이루기도 한다 : F-1-4 幼學姜寅俊年27 妻陳氏齡31 率同生弟弘俊年24 4寸同生弟伯俊年23.

2) B자료에 대하여 : ① B호적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체 68호중 13가 부부호이다(13/68호). ② 호수의 연령은 30대(최저 35세, 幼學張琪斗와 幼學邊奉仁)에서 60대(최고 62세, 業武知世軍官鄭宗秀)로 분포한다. ③ B자료에서는 부부호 13개호중 1개호만(B-2-5: 忠義盧文植年53 妻高氏齡56)이 처가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3) C자료에 대하여 : ① C호적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체 67호중 11호가 부부호이다(11/67호). ② 호수의 연령은 30대(최저 35세, 業武姜權必)에서 60대(최고 65세, 業武知世鎮軍官鄭宗秀)까지 존재한다. ③ C자료에서는 부부호 11개호중 1호만(C-2-5: 忠義盧文植年56 妻高氏齡59)이 처의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4) D자료에 대하여 : ① D호적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체 43호중 8호가 부부호이다(8/43호) ② 호수의 연령은 30대(최저 31세, 業武烽燧軍金玆文)에서 40대(최고 48세, 業武知世鎮射夫朴基柱)까지로 나타난다. ③ D자료의 8개호중 2개호(D-3-5: 業武知世鎮射夫朴基柱年48 妻李姓年53; D-6-2: 業武烽燧軍金玆文年31 妻金姓年32)가 처가 연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D자료까지 검토한 결과, 부부호는 전체 252개호 중에서 43개호가 됨으로써 약 17%를 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一子 아닌 子와 함께하는 戶

자녀와 호를 함께하는 경우 1자가 부모 등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호적중초에서는 2子 및 기타의 자녀와 함께하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난다. 출생순서상 첫 번째가 여성이거나, 아니면 첫 번째가 남자였으나 그 1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어떠한 사유로 1자가 독립하여 별도 호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2子 등의 다른 자와 함께 호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자료에서는 戶首와 함께하는 구성원으로 率2女年¹⁸⁴²⁾, 率1

42) A-6-2: 業武統船所庫直梁京良年47 妻金姓年41 率2女年18.

女年11⁴³⁾ 등으로 女息(딸)을 등재시키고 있지만 B자료부터는 호수와 함께하는 구성원으로 女息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록방식에 있어 1女·2子 등의 표현은 출생자녀에 대해 순서대로 적은 것으로, 1번째가 딸인 女息, 2번째가 아들인 子息 등의 표현 방식이 된다.⁴⁴⁾ 따라서 기록상 4子 邑軍官己出年38 또는 6子聖允年41 등의 경우, 아들과 딸을 합하여 출생 순서에 따라 네 번째인 38세된 아들 邑軍官 己出, 여섯 번째인 41세인 아들 聖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戶首가 2자와 함께하는 호를 구성하는 경우는 첫 번째 자녀가 딸이어서 딸을 출가시킨 다음 두 번째인 아들과 호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이하게 보이는 A-14-4자료의 경우, 호수인 93세의 幼學金興福이 75세의 妻 茶氏와 함께 41세 된 6子聖允 夫婦와 孫1子繼贊(年19) 孫2子繼俊(年13)와 더불어 호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호수인 93세의 幼學金興福이 6번째 자녀인 아들 聖允과 호를 함께하는 것으로, 5번째 자녀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정을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게 된다.⁴⁵⁾

따라서 戶首가 2子 또는 2子이하와 함께하는 호가 기록상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⁴⁶⁾

43) A-6-5: 業武知世軍官鄭宗守年45 妻崔姓年39 率1女年11 2子石俊年8.

44) 일례로 A-6-5: 業武知世軍官鄭宗守年45 妻崔姓年39 率1女年11 2子石俊年8 기록의 경우, 호수인 業武知世軍官鄭宗守의 자녀에 있어 1번째는 女息으로 나이는 11살, 2번째는 男子로써 8살 石俊으로 해석된다.

45) A-14-4: 幼學金興福年93 妻茶氏齡75 率6子聖允年41 婦姜氏年41 孫1子繼贊年19 2子繼俊年13자료 참조요. 이 내용은 항리호적중초상 호수의 나이가 가장 많은(93세) 기록이 된다. 그는 여섯 번째 자녀인 아들과 같은 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앞선 자녀들은 모두 딸들이거나 아니면 아들도 있었으나 사망한 경우, 또는 앞서 있던 아들들이 어떤 사유로 별도 호를 이루어 독립하여 나간 경우 등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호수인 幼學金興福(年93)과 妻 茶氏(齡75)사이의 나이차이가 무려 18살이나 되는 것으로, 妻 茶氏는 幼學金興福의 後妻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46)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여러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B-1-1: 業武助羅射夫姜京文年57 率2子支平年19; B-2-1: 忠義盧大允年66 妻李氏齡65 率2子必良年40 婦李氏齡33 孫1子公律年11; B-5-3 業武知世射夫朴琪柱年42 母朴姓年81 妻李姓年47 率2子良宇9; C-1-1: 業武助羅鎮槽軍姜京文年60 率2子助羅鎮槽軍支平年22; C-1-5: 幼學姜道敬年72 率1子必權年47 婦朴氏齡48 2子必恒年45; C-2-1: 忠義盧大允年69 妻李氏齡68 率2子00年43 婦李氏齡36 孫1子公律年14; C-5-3 業武知世射夫朴琪柱年45 妻李姓年45 率2子良宇12; D-2-3: 幼學朱必宗年66 率2子再佑年19 등 참조요.

<5> 單獨戶

단독호는 혼자서 호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단독호는 원래는 몇 명의 호구성원이 있었지만 다른 구성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일인이 호를 승계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음에서 몇 사례를 통해 이를 이해한다.

1) 사례1

A-1-1 業武助羅射夫姜得先年73 妻李姓年70 率3子京文年39 婦朴姓年44

B-1-1 業武助羅射夫姜京文年57 率2子支平年19

C-1-1 業武助羅鎮櫓軍姜京文年60 率2子助羅鎮櫓軍支平年22

D-1-1 業武助羅鎮櫓軍姜京文故代子支平年25

E-1-1 業武助羅鎮櫓軍姜支平年28

F-1-1 助羅鎮櫓軍姜支平年31

① A자료에서 業武助羅射夫姜得先(년73)의 3子 京文은 18년 후 B자료에서 부모와 처가 모두 없어진 가운데(사망추정) 자신의 2자 支平(年19)과 둘이서 호를 승계하고 있다.

② D자료에서 호수인 姜京文의 사망(60~63세)으로 2자 支平(年25)이 호를 승계한다. 이에 따라 支平은 혼자서 호를 맡게 되며, 그 후 E와 F자료에서 계속하여 단독호를 구성하고 있다.

2) 사례2

A-1-4 業武防軍金春京47 母金姓年66 妻秋氏齡37 率同生妹年32⁴⁷⁾

B-1-4 業武金春京故代妻秋氏齡55

C-1-4 秋氏齡58; D-1-4 秋氏齡61

① A자료에서 業武防軍金春京(年47)은 모와 처, 그리고 그의 여동생(年32)과 함께 호를 구성하고 있다.

② 18년후인 B자료에서 호수인 業武金春京이 사망(62~65세)으로 인하여 妻秋氏(齡55)가 호를 승계하고 있다. 즉, A자료에서 함께하던 인원들은 18년 사이에 모두 탈락되고 있다. A자료 당시 66세이던 母金姓은 사망한듯하고, 함

47) 項里戶籍中草에서 32세나 되는 호수의 여자동생을 호에 같이 데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계 데리고 있던 同生妹(年32)는 출가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B자료에서 妻秋氏(齡55)는 결국 단독으로 호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③ 그 후 C자료와 D자료에서 秋氏는 단독으로 호를 이어가다가 F자료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다. 추정컨대 D자료에서 61세였던 秋氏는 사망한 것으로 보아진다.

3) 사례3

A-8-2 族親衛李千云故代子用根45 妻安氏齡41 率1子希柱年5

B-7-4: 族親衛李希柱故代弟寬柱年15 母安氏齡59 兄嫂玉氏齡24

C-7-4: 族親衛李寬主年18

① A자료에서 族親衛李千云의 사망으로 子用根(年45)이 그 妻 安氏(齡41)와 1子希柱(年5)와 함께 호를 승계한다.

② 그러나 18년후인 B자료에서, 18년 전에 5살이던 1子希柱가 사망(20~23세)하면서 '故代弟'로 그의 동생인 寬柱(A자료에서는 아직 등재되지 않았음)가 15살의 나이로 호를 승계한다. 따라서 호수가 된 寬柱는 자신의 母 安氏(齡59)와 사망한 형 希柱의 처(兄嫂玉氏齡24)와 함께 호를 이루게 된다.

③ 그러다가 C자료에서는 李寬主(年18) 단독으로 호를 이루게 된다. 결국 母安氏는 사망(59~62세)한 것으로 추정되며 兄嫂인 玉氏는 사망하거나 재혼하여 호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D자료이하에서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故代子·故代妻·故代弟·老代子 등을 통한 戶의 承繼 및 家族關係의 變化

戶首의 사망으로 인하여 새로운 호수에게 호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 표현으로 故代子·故代養子·故代孫·老代子·故代妻·故代弟 등이 사용된다. '故00'라는 표현은 호수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子·養子·孫·妻·弟 등이 새로이 호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호수였던 자의 사망연령을 추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족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정 호를 중심으로 추적해보면 호의 승계모습은 일반적으로 위의 형태가 혼합되어 존재한다. 특히 ‘老代子’의 경우는 주로 여성이 호수가 되었다가 일정연령에 이르면 늙은 노인임을 이유로 자에게 호를 승계하는 것으로 당시사회가 관념하던 老人의 기준에 대해 이해를 제공한다.⁴⁸⁾ 물론 ‘故代妻’의 경우도 호수인 남편의 사망으로 妻가 일시 호수가 되었다가 ‘老代子’로 연결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여성 단독으로 호를 이어가기도 한다. 결국 여성의 호수로서의 지위는 자가 어린 경우 일시적으로 그 지위를 맡고 있다가 자에게 바로 호수를 이전하는 것이 전형적이 된다.⁴⁹⁾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 사례를 통해 이해를 더하도록 한다.

<1> 故代子와 故代孫

1) 사례1

- A-14-2 忠瓚知世軍官夫方伊年57 後妻金氏年43--率前妻2女年21⁵⁰⁾ 3子知世鎮屬大川年
 18 4子知世土兵大準年13 後妻1子知世土兵極川年7
 B-12-3 忠贊知世軍官夫方伊故代子大俊31--繼母金姓年61--率同生弟克千年25
 C-12-3 忠贊知世軍官夫大俊年34 繼母金姓年64 率同生弟克川年28

48)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노인연령과 관련하여 본 호적자료에서 가장 많은 나이는 93세로 나타난다. A자료에서 호수인 幼學金興福이 93세이다. 아울러 妻 茶氏(齡75)와의 나이 차이는 18세이다. 아마도 後妻가 아닐까 추정된다. 그리고 6子인 聖允(年41) 부부와 호를 구성하고 있음도 특이하다(A-14-4: 幼學金興福年93 妻茶氏齡75--率6子聖允年41 婦姜氏年41--孫1子繼贊年19 2子繼俊年13 참조요). 그 다음은 B자료에 기록된 여성으로서 業武知世射夫 朴琪柱(年42)의 母 朴姓이 81세로 나타난다. 그의 母 朴姓은 3년후인 C-5-3자료상의 호수 朴琪柱(年45) 호적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녀의 사망연령은 결국 81~84세로 추정된다(B-5-3 業武知世射夫朴琪柱年42 母朴姓年81 妻李姓年47 率2子良宇9 참조요).

49) 다음의 일례를 참고한다. A-9-1:業武玉浦射夫河鳳權年25 母徐姓年63 妻權姓年24; B-8-3: 業武玉浦鎮軍官河0主年22 祖母徐姓年81 母權姓年43; C-8-3 業武玉浦鎮軍官河億主年25 祖母徐姓年80 母權姓年46의 자료를 참고한다. A에서 戶首 業武玉浦射夫河鳳權은 25세로써 母徐姓(年63)과 妻權姓(年24)와 함께 한호를 구성한다. 18년후인 B자료에서는 지난번 A에있어 호수인 河鳳權의 子인 業武玉浦鎮軍官河0主가 22세로 호수가 되어 호를 승계하면서, 그의 母이자 A자료의 河鳳權의 妻인 權姓(年43)과 祖母徐姓年81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C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 C자료에서 祖母徐姓의 나이가 80으로 적혀있으나 이는 84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D자료이하에서 이 호는 탈락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50) 본 항리호적중초에서 21살의 (前妻)2女가 호의 구성원으로 함께 기록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른 예로는 A-6-2: 業武統船所庫直梁京良年47 妻金姓年41 率2女年18; A-6-5: 業武知世軍官鄭宗守年45 妻崔姓年39 率1女年11 2子石俊年8 등이 나타난다. 즉, A-6-2에서는 18살의 2女가, A-6-5에서는 11살의 1女가 호에 같이 등재되고 있다.

D-8-3: 忠贊知世鎮軍官夫大俊年37 母金姓年66 率同生弟克川年31 同生2弟贊伊年20
 E-8-3: 忠贊知世鎮軍官夫大俊年40 繼母金姓年69 率同生弟克川年34 同生贊伊年23
 F-8-2: 忠贊知世鎮軍官夫大俊年43 繼母金姓年72 率同生弟克川年37 同生贊伊年26

① A자료를 기초로 18년후의 B자료를 검토하면, 전 호수 忠贊知世軍官夫方伊의 사망(57~60세)으로 前妻의 4子 였던 知世士兵大俊(年31)이 ‘故代子’를 원인으로 호를 승계한다. 사망한 父의 後妻는 繼母金姓(年61)으로 표현되고 그녀가 낳은 1子는 同生弟克千(年25)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A자료에 기록되어 있던 다른 구성원들은 B자료에서 탈락되어 보이지 않는다.

② C자료에서도 변함없이 호가 이어지다가 D자료에서 갑자기 20살의 同生2弟贊伊가 등재되고 있다.⁵¹⁾ 그다음 E와 F자료에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된다.

2) 사례2

A-1-1 業武助羅射夫姜得先年73 妻李姓年70 率3子京文年39 婦朴姓年44
 B-1-1 業武助羅射夫姜京文年57 率2子支平年19
 C-1-1 業武助羅鎮櫓軍姜京文年60 率2子助羅鎮櫓軍支平年22
 D-1-1 業武助羅鎮櫓軍姜京文故代子支平年25
 E-1-1 業武助羅鎮櫓軍姜支平年28; F-1-1 助羅鎮櫓軍姜支平年31

① A자료에서 호수인 業武助羅射夫姜得先(年73)의 호는 B에서 그의 3子 京文이 승계하고 있다. B에서 호수인 3子 業武助羅射夫姜京文(年57)은 2子支平年19과 둘이서 호를 구성한다.

② D에서 호수 姜京文이 사망(60~63세)하면서 ‘故代子’를 원인으로 業武助羅鎮櫓軍 支平(年25)이 호를 승계한다. 그 후 支平은 E·F자료에서 단독으

51) 이처럼 나이 많은 20세의 자녀가 처음으로 호구원으로 등재된다. 또 다른 예로 B-13-4자료와 관련되는 C-13-4: 幼學李永俊故代子同完年24 母李氏齡50의 자료를 보면, B자료에서 전혀 기록이 없던 아들 同完이 24세의 나이로 처음 호적중초에 등재되면서 호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項里戶籍中草자료가 당시의 인구실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미혼여자 구성원의 경우 호적중초에 등재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역시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項里戶籍中草가 가지고 있는 기록내용을 기초로 일단 제한된 검토를 기하는 것인 만큼, 실제인구문제 및 그와 관련한 논의는 별도의 연구를 더하여야 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로 호를 지속해 가고 있다.

3) 사례3

C-13-1: 幼學金元玉年61 妻李氏齡51--率1子長律年28 婦金氏齡26 2子成律年16

D-8-5: 幼學金元玉故代子長聿年31 母李氏齡61 妻金氏齡29

① C자료에서 호수인 幼學金元玉과 妻그 및 1子長律年28과 子婦, 2子成律年16이 호를 구성하다가 D에서 幼學金元玉이 사망(61~64세)함으로써 1子長聿(年31)이 故代子로 호를 승계한다. C자료상이 2子成律은 탈락되어 없다.

② D자료 이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B-12-4: 業武知世射夫朴同柱年54--率1子知世鎮屬今石年38 婦黃姓年37 孫1子永俊年7

C-12-4: 業武知世射夫朴同柱故代子今石年41 妻黃姓年40 率1子知世鎮屬永俊年10

E-9-2: 業武知世鎮射夫朴今碭年44 率1子永俊年13

F-9-1: 業武知世鎮射夫朴今碭年47 率1子鎮屬永俊年19

① 위의 사례 역시 B자료에서 호수인 業武知世射夫朴同柱가 1子知世鎮屬今石과 子婦, 孫과 한 호를 이루다가 C자료에서 朴同柱가 사망(54~57세)함으로써 故代子하여 今石(年41)이 호를 승계한다. 그리고 그의 1子 永俊은 10살에 知世鎮屬으로 편성되고 있다.

② D자료에서는 朴今碭의 호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E자료에서 業武知世鎮射夫朴今碭(年44)은 母가 탈락된 채로 1子永俊(年13, 年16의 誤記일 것임)과 함께 기록되고 있으며 F자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4) 사례4

C-14-1: 幼學文必誠年65 妻朴氏齡64 率同生弟必得年58 弟嫂李氏齡54 同生弟必權年48 弟嫂柳氏齡37 1子應奎26 婦姜氏齡30

D-9-2: 幼學文弼誠故代子應奎年29 母朴氏齡67 妻姜氏齡33

① C자료에서 호수인 幼學文必誠은 妻와 동생 및 弟嫂, 1子應奎(年26)와 子婦 를 포함해서 8명의 구성원으로 대호를 이루고 있다.

② D자료에서 幼學文弼誠이 사망(65~68세)함으로써 ‘故代子’를 원인으로 應奎(年29)가 호수되면서 母朴氏(齡67)와 妻姜氏(齡33)만으로 호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C에 있던 父文必誠의 두 동생과 두 제수는 모두 탈락되어 사라진다.

③ ‘故代子’로 자가 호수가 되어 호를 승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에 함께 있었던 父의 同生과 그 妻 즉, 弟嫂 등은 호에서 탈락됨을 알 수 있다.

5) 사례5 --故代孫의 경우

A-9-4 幼學病人李德春年41 母李氏年65 妻盧氏年42 率2子應連年23

B-9-1 幼學李德春年64 妻盧氏齡64 率2子應連年41 婦張氏齡42 孫1子在善年15

C-9-1 幼學李德春年67 妻盧氏齡67 率1子應連年44 婦張氏齡45 孫1子在先年18 2子進善年9

D-6-1: 李德春故代孫病人在先年21 祖母盧氏齡70 妻白氏齡24 率同生弟進善年12

E-6-1 幼學李在先年24 祖母盧氏齡73 妻白氏齡27 率同生弟進善年15

F-6-1 幼學李在先年27 祖母盧氏齡76 妻白氏齡30 率同生弟進善年18

① A자료에서 호수 幼學病人李德春은 母와 妻, 2자와 함께 호를 구성한다. 그런다음 18년후인 B자료에서 母의 사망 및 2자의 혼인으로 孫1子在善(年15)과 함께하는 호로 구성원의 변화가 있게 된다.

② D자료에서는 幼學李德春 사망(67~70세)후 孫1子在先(年21)을 戶首로 하여, 祖母와 妻白氏(齡24), 同生弟進善(年12)이 함께 호를 이루고 있다. C자료상에 있는 在先의 父母인 1子應連(年44) 婦張氏(齡45)이 갑자기 탈락되어 보이지 않으면서 ‘故代孫’病人在先(年21)이 호를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⁵²⁾

③ E와 F자료에서는 幼學李在先이 호수가 되어 D자료상의 구성원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2> 故代養子

52) 또 다른 사례에서도 戶首였던 父에게 1자와 子婦가 있었음에도 3년 후 그 父의 사망 시에 그 子가 戶에서 함께 없어지면서 전혀 새로운 孫子가 등재되면서 ‘故代孫’을 원인으로 祖父의 호를 이어가고 있는 예가 있다. C-1-5: 幼學姜道敬年72--率1子必權年47 婦朴氏齡48 2子必桓年45 ; D-1-5: 幼學姜道敬故代孫寅俊年21 妻陳氏齡25 참조요.

부부사이에 친생의 자가 없을 경우 養子를 입양하여 家戶를 이어가게 한다. 다음에서 '故代養子'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1) 사례1

A-11-3: 業武永登射夫張權必年33 母鄭姓年75 妻盧氏年37

B-10-4 業武永登射夫張權必51-妻盧氏年45-率同姓養子能宗年36

C-10-4 業武永登射夫張權必故代養子能宗年39 母盧氏年48 妻金姓年30

D-7-1 業武張能宗年42 母盧氏年58⁵³⁾ 妻金姓年33

① A자료를 이어 B에서 호수 業武永登射夫張權必(年51)과 그 妻盧氏(年45)사이에 同姓養子인 能宗(年36)을 두고 있다. 특히 同姓의 養子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② C자료에서 호수인 業武永登射夫張權必의 사망(51~54세)으로 '故代養子'를 원인으로 能宗(年39)이 호수가 되어 호를 승계하고 있다. 그러면서 母盧氏(年48)와 妻金姓(年30)가 같은 호에 함께 하고 있다.

③ D에서는 C의 구성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 후 E·F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사례2

C-10-1: 幼學孫有腹年54 妻千氏齡50

D-6-4: 幼學孫有卜故代妻千氏齡53

E-6-4: 千氏故代養子幼學孫之翌年22 妻金氏齡22

F-6-3: 幼學孫智斗年25 妻金氏齡25

① C자료에서 幼學孫有腹을 호수로 妻 千氏와 부부호가 되고 있다.

② D자료에서 호수인 幼學孫有腹의 사망(54~57세)으로 妻 千氏가 단독으로 호를 승계한다.

53) 앞선 A·B·C자료와 비교해서 D의 母盧氏의 나이가 年58로 특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양자와의 나이차를 고려한 것인지 알 수 없다. B·C자료에서는 養子와 母의 나이차이가 9살 차이이지만, D자료에 따르면 16살의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母盧氏의 나이를 58세로 한 것이 양자인 戶首 業武張能宗과의 관계를 합당하게 하기위해서 나이를 의도적으로 올려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③ E자료에서 여성호수였던 千氏가 사망(53~56세)함으로써 ‘故代養子’를 원인으로 幼學孫之禔(年22)이 호를 승계하면서 그의 妻金氏(齡22)와 함께 호를 구성한다. 이는 D에서 幼學孫有卜이 사망한 다음 家戶를 이어가기 위하여 孫之禔를 養子로 하였다가 3년 후에 孫有卜의 妻인 千氏가 사망함으로써 바로 故代養子幼學孫之禔로하여 孫之禔이 戶首가 되고 있는 것이다. 死後養子の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④ F자료에서 戶首인 幼學孫之禔이 孫智斗로 改名하고 있다.

<3> 老代子

1) 사례1

A-11-5: 皇朝人朴春得年41 妻金姓年37--率1子防軍聖律年14

B-10-5 金姓年55--率1子 烽燧軍朴聖業年15

C-10-5 金姓老代子皇朝人⁵⁴⁾烽燧軍朴姓業年19 母金姓年58

① A자료에서 호수 皇朝人朴春得(年41)이 18년 후의 B자료에서 호수가 妻인 金姓(年55)으로 바뀌어 진다. 그러면서 1子 烽燧軍朴聖業(年15)과 함께 하고 있다. 물론 B자료상의 1子 烽燧軍朴聖業(年15)은 A자료에서 있었던 1子防軍聖律(年14)이 아닌 다른 子인 것으로, 이름과 연령을 통해 알 수 있다.⁵⁵⁾

② C자료에서는 호수였던 金姓이 늙음을 이유로 대신 아들인 皇朝人烽燧軍朴姓業(年19)에게 戶首地位가 이전되고 있다.

③ 중요한 것으로, 女性의 戶首로서의 지위는 戶內에 다른 子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그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인 호수 자신의 연령이 늙음으로 인정되면 호적중초상에 ‘老代子’로 표기하면서 子에게 그

54) B자료에서는 1子 烽燧軍朴聖業年15로 적었다가 C자료에서 皇朝人烽燧軍朴姓業年19으로 적고 있다. 烽燧軍에서 父의 사망후 1子에게 皇朝人烽燧軍으로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皇朝人은 烽燧軍등의 軍役に 종사하는 業武계열로써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하여 皇朝人과 관련하여 또 다른 자료를 참고한다. C-10-2자료에서 <統首>皇朝人邑軍官朴姓泉年49 妻黃姓年51 率1子用完年30 婦劉姓年30 2子邑軍官啓華年22 同生弟烽燧軍姓文年28 자료이다. 즉, C-10-2자료에서 戶首인 朴姓泉(年49)이 皇朝人邑軍官이며, 그의 2子邑軍官啓華(年22)와 同生弟烽燧軍姓文(年28) 등의 子와 동생이 모두 軍役に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皇朝人은 軍役に 종사하는 業武계열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55) 물론 A자료상의 ‘1子防軍聖律年14’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지위를 물려주게 된다. 위에서 보는 C자료에서는 母金姓의 나이 58세를 늙음으로 하여 호수의 지위를 자에게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는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사례2

B-11-1 忠義盧孝善故代妻李氏齡62--率1子盧閔伊年22

C-11-1 李氏老代子忠義盧允伊年25 母李氏齡56

D-7-2 忠義盧允伊年28 母李氏齡59

E-7-2 忠義盧允伊年30 ; F-7-1 忠義盧允伊年34

① B자료에서 호수였던 남편 忠義盧孝善의 사망으로 妻李氏(齡62)⁵⁶⁾가 戶首로서 1子盧閔伊(年22)와 함께 호를 승계하고 있다.

② C자료에서 李氏는 늙음(齡56)을 이유로 호수를 1子인 忠義盧允伊(年25)가 승계하고 있다. B자료에서 53세로 妻李氏는 '故代妻'하면서 호수가 되었다가 56세가 되면서 '老代子'로 자에게 호수의 지위를 이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1子 盧閔伊의 나이는 B자료에서 22세에서 호수가 되는 C자료에서는 25세로 변화되었다.

③ E자료에서는 母李氏가 사망(59~62세)추정으로 호에서 탈락됨으로써 忠義盧允伊(年30) 혼자서 단독호가 된다. F자료에서 역시 단독호로 이어지고 있다.

3) 사례3

B-13-2 幼學姜必文年48 後妻黃氏齡39 ;C-13-2 幼學姜必文年51 後妻黃氏齡42 D-9-1

幼學姜必文故代妻黃氏齡45 率1子萬俊年3

E-9-1 黃氏年48 率1子萬俊年6

F-8-5 黃氏老代子幼學姜萬俊年9 母黃氏齡51

① B와 C자료에서 幼學姜必文은 後妻黃氏와 부부호를 이루고 있다.

56) 연속되는 자료에 의하면 B자료상의 忠義盧孝善妻李氏의 연령은 62세가 아니고 53세로 보아진다.

② D자료에서 호수인 幼學姜必文의 사망(51~54세)으로 妻黃氏(齡45)가 호수가 되어 호를 승계한다. 특기할 것으로 1子萬俊이 3세로 호적중초에 처음으로 등재 된다. E자료에서도 1子萬俊(年6)이 아직 어린나이에 인하여 萬俊의 母인 黃氏(齡48)가 호수를 계승한다.

③ F자료에서 母인 黃氏가 51세가 되면서 9살에 불과한 幼學姜萬俊이 '老代子'로 戶首가 된다. 母의 늙음에 대한 기준과 호를 승계할 수 있는 자의 연령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4) 사례4

- A-5-2: 忠義盧光玉故代子國良年37 妻金氏齡42--率同生弟正良年25--1子芳律年19, 2子丙律年6
- B-4-5: 忠義盧國良年55 妻金氏齡60-- 率同生弟正良年43 弟嫂徐氏齡43 1子芳律年37 婦金氏齡38 2子炳律年24 孫1子斗辰年15/
- C-4-5: 忠義盧國良年58 妻金氏齡62 率同生弟正良年46 弟嫂徐氏齡46 率1子芳律年40 婦金氏齡41 2子秉律年27 孫1子斗辰年18
- D-3-4: 忠義盧國良故代妻金氏齡66 率2孫斗吉年18
- E-3-4 金氏老代孫忠義盧斗吉年21 祖母金氏齡69 率同生弟斗龍年14 4寸同生弟洛龍年9
- F-3-4: 忠義盧斗吉年24 祖母金氏齡72 率同生弟斗用年17 4寸同生弟洛龍年12

① A자료에서 '忠義盧光玉故代子國良(年37)'으로 父 忠義盧光玉의 사망으로 인해 子 國良(年37)에게 호수가 이전되는 일반적 모습이 나타난다.

② 18년후인 B자료와 그 다음 C자료에서 함께하는 호의 구성원들이 기록되고 있다. 동생과 弟嫂, 자와 며느리 손자 등의 가족이 함께하고 있다.

③ D자료에서는 호수였던 忠義盧國良이 사망(58~61세)하면서 그 처인 金氏(齡66)가 '故代妻'로 호수가 된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호의 구성원들이 모두 탈락되고 전혀 처음 등재되어 나타나는 2孫斗吉(年18)과만 호를 구성한다.

④ E자료에서는 祖母인 金氏가 늙음(齡69)을 이유로 D에서 새로이 함께한 2孫 忠義盧斗吉(年21)이 '老代孫'으로 호수가 된다. 그러면서 同生弟斗龍(年14)과 4寸同生弟洛龍(年9)이 새롭게 호의 구성원이 되어 나타난다. 연령상으

로는 2孫 忠義盧斗吉이 21세로서 호수가 되고 있으며, F자료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4> 故代子·故代妻·老代子 등의 복합

1) 사례1

- A-5-2 忠義盧光玉故代子國良 37-妻金氏齡42--1子芳律19 2子丙律6
- B-4-5 忠義盧國良年55 妻金氏齡60 率同生弟正良年43 弟嫂⁵⁷⁾徐氏齡43 1子芳律年37 婦金氏齡38 2子炳律年24 孫1子斗辰年15
- C-4-5 忠義盧國良年58 妻金氏齡62 率同生弟正良年46 弟嫂徐氏齡46 率1子芳律年40 婦金氏齡41 2子秉律年27 孫1子斗辰年18
- D-3-4 忠義盧國良故代妻金氏齡66 率2孫斗吉年18
- E-3-4 金氏老代孫忠義盧斗吉年21 祖母金氏齡69 率同生弟斗龍年14 4寸同生弟洛龍年9
- F-3-4 忠義盧斗吉年24 祖母金氏齡72 率同生弟斗龍年17 4寸同生弟洛龍年12

① A자료에서 호수인 忠義盧光玉의 사망으로 ‘故代子’하면서 國良(年37)이 호를 승계한다. 18년후인 B자료에서 호수인 忠義盧國良(年55)은 妻와 동생 正良(年43), 弟嫂인 徐氏(齡43), 그리고 1子芳律(年37)부부와 손자斗辰(年18), 2子秉律(年27)등과 함께 8명으로 대호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同生弟正良(年43)과 1子芳律(年37)의 나이차는 여섯 살에 불과하다. C자료에서 이들 구성원이 모두 그대로 이어진다.

② D자료에서 놀랍게도 호수인 忠義盧國良이 사망(58~61세)하고 그 妻金氏(齡66)가 호수가 되면서 오직 2孫斗吉(年18)과만 호를 구성한다.⁵⁸⁾ 여기서 2孫斗吉(年18)은 18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호적에 등재되고 있다.

57) 호수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구성원으로 弟嫂의 경우도 있지만 특별하게 남편인 호수의 사망으로 호를 승계한 妻(‘故代妻’)가 子와 시동생인 媿叔과 함께 계속적으로 호를 구성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B-6-3 業武助羅射夫妻時哲年59 妻金姓年56 率同生弟己春年41 同生弟再春年36 1子萬伊年12 ;C-6-3 業武助羅檣軍姜時哲故代妻金姓年59 率1子萬伊年12 媿叔助羅土兵姜其春年44 媿叔助羅檣軍姜在春年39 참조요.

58) 특별히 지적될 내용으로 위의 B-4-5와 C-4-5 忠義盧國良年58의 가족 중 同生弟正良이 盧國良의 사망 후인 D자료에서 별도 호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의 D이하 자료(D-1-2)에서는 忠義盧正良年49 率1子京律年21이 별도호로 독립하여 기록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忠義盧正良(年49)의 1子京律은 21세에 처음 호적에 등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忠義盧正良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내용을 참조바람. D-1-2 忠義盧正良年49 率1子京律年21; E-1-2 忠義盧正良年52 率1子京律年24 婦張氏齡26; F-1-2忠義盧正良年55 率1子京律年27 婦張氏齡29.

③ E자료에서 호수의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일시적으로 호수를 맡았던 忠義盧國良의 妻 金氏는 69세의 나이에 기해 ‘老代孫’하면서 D에서 함께하였던 孫子 盧斗吉(年21)에게 호수를 물려준다. 그러면서 盧斗吉의 동생 斗龍(年14)과 4寸同生 洛龍(年9)을 함께 호의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역시 동생 斗龍은 14살로, 4寸同生 洛龍은 9살로 처음으로 호에 등재된다.

F자료에서는 이들 구성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 사례2

B-13-2 幼學姜必文年48 後妻黃氏齡39

C-13-2: 幼學姜必文年51 後妻黃氏齡42

D-9-1: 幼學姜必文故代妻黃氏齡45 率1子萬俊年3

E-9-1 黃氏年48 率1子萬俊年6(*여성戶首)

F-8-5: 黃氏老代子幼學姜萬俊年9 母黃氏齡51

① 위의 D자료는 호수인 幼學姜必文의 사망(51~54세)으로 後妻인 黃氏(齡45)가 호를 승계(‘故代妻’)하면서 3살인 1子 萬俊과 함께 호를 구성하고 있다.

② E자료에서 母인 黃氏의 나이 48세이고 1子萬俊의 나이는 6살에 불과한 상태에서 母 黃氏가 계속하여 호수가 되고 있다.

③ 그런 다음 F자료에서 母 黃氏가 51세가 되면서 노인 됨을 이유로(‘老代子’) 9살인 1子 萬俊에게 戶首의 지위가 이전되고 있다. 결국 아들의 나이가 9살에 불과함에도 50세를 넘은 여성인 母에 대해 노인임을 이유로 호수의 지위를 이전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여성의 호수로서의 지위는 일시적이며 최소한의 시간만 이를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5> 故代弟

A-8-2 族親衛李千云故代子用根45 妻安氏齡41--率1子希柱年5

B-7-4 族親衛李希柱故代弟寬柱年15 母安氏齡59 兄嫂玉氏齡24

C-7-4 族親衛李寬主年18(* 18세로 단독호 됨)

① A자료에서 호수인 族親衛李千云의 사망으로 아들인 用根(年45)이 호를 승계한다.

② 18년후인 B자료를 보면 그 사이에 A자료상의 5살된 1子希柱가 父인 用根의 사망(추정)으로 호수로서 호를 승계하였다가 希柱의 사망(20~23세)으로 동생인 寬柱(年15)가 '故代弟'로 호를 승계하게 된다. 그러면서 母安氏(齡59) 및 希柱의 妻인 兄嫂 玉氏(齡24)와 함께 와 호를 구성하게 된다.

③ C자료에서 호수인 族親衛李寬主(年18)는 단독으로 호를 이루게 된다. 구성원들의 탈락사유는 알 수 없다.

4. 戶籍中草에 처음 등재되는 연령

호적중초에 처음 등재되는 연령은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전체인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된다. 처음 등재되는 연령이 예를 들어 20세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인구과약에서는 실제 하였던 인구를 20여 년 동안 반영하지 못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⁵⁹⁾ 조사통계방법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전체인구를 사실대로 파악함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당시 조선후기사회에서 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넘어 불가능한 작업 내지 영역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호적상의 인구기록은 국방 및 부세부담에 대해 계획하고 수취하는 기초자료로 작용하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호적기록에 있어 실제와의 차이 및 왜곡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내재되고 있는 것이다. 현지의 사회실정에 따라서 호적기록을 통한 인구실제반영의 차이나 왜곡정도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⁶⁰⁾ 인구과약의 부정확은 사회 및 국가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한다.

59) 조선에 있어 호적기록 시 나이 등을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에 대한 다산의 견해를 참고한다. “齊나라의 高帝는 詔書를 통해 말하였다. 黃籍은 사람의 큰 버리요 나라를 다스리는 출발이다. 근자에는 백성들이 속이는 버릇이 오래되어 벼슬자리를 몰래 적어 넣거나 나이를 거짓으로 바꾸고 있다.”.....따라서 풍속이 나빠지고 법이 어지러우면 백성의 농간질이 그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고급이 한가지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름이 없는 것이다. 『牧民心書』 戶典六條 第四條 戶籍 참조.

60)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호적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우리역사상의 호적기록 등에 대한 이해를 잠정적으로 추구한다. 宋代에는 “令諸州歲奏男夫二十爲丁 六十爲老 女口不豫”의 조치가 있어서 各州는 매년 20세 이상 59세까지의 男丁人數를 등기하여 上報하게 하였으며 여자는 이

결국 사회발전은 호적기록의 높은 정확도를 기본으로 하여 현재를 설계하고 미래에 대한 변화를 구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거제도 향리 호적중초에서 최초로 호적에 등재되는 남성의 연령을 통해 명백하게 사실과는 상이한 호적기록실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당시 호적기록이 갖는 사실반영의 미흡내지 왜곡에 대한 일면적 이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적중초에 대해 사실관련성을 부정하면서 기록내용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어야 한다. 호적중초자료가 갖는 당시 사회실제부합정도 및 종합적 의미에 대해서는 연구의 방대한 축적을 거친 후의 결론에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서, 현재 호적자료에 대해 이루어지는 검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호적중초에 대해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분석·이해하는 것으로서 후속연구를 위한 현재적 검토의미는 충분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다.

1) 사례1

C-13-2 幼學姜必文年51 後妻黃氏齡42

D-9-1 幼學姜必文故代表黃氏齡45 率1子萬俊年3

E-9-1 黃氏年48 率1子萬俊年6

F-8-5 黃氏老代子幼學姜萬俊年9 母黃氏齡51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송대에 丁口를 등재하는 冊子를 ‘丁帳’ ‘戶帳’으로 칭하였으며 매호의 모든 인구상황을 등기하였다. 국가는 유용한 인구의 장악을 중시하였고 州縣은 호구등기 시에 흔히 丁帳상에 增損을 가하고 戶部에 상보하여 호구가 비례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형성하였다.

또한 戶籍類文書의 다양한 발전과정 중에 官方的 ‘戶籍’과 百姓의 ‘戶帖’이 분리되는 현상이 출현하였다. 늦어도 唐代에 이미 ‘戶帖’명목이 있어서 관부가 당해 호의 인구정황을 작성하여 백성에게 발급해 주었으며, 이를 民戶가 보존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날의 중국의 가정에서 보존하는 ‘戶口簿’와 유사한 것이 된다.

北宋初期에 ‘版籍’ ‘戶帖’ ‘戶抄’를 작성토록 하였다. 그 중에서 ‘版籍’은 官方이 장악하는 戶籍과 計帳이며, ‘戶帖’은 民戶가 保存하도록 발급한 符帖이며, ‘戶鈔’는 납세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明代에 이르러 이는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 <明史 食貨志>에서 明初부터 국가는 戶口를 등기할 때에 각호의 인구 성명 年齡 住所 토지 등의 상황을 규정에 따라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를 한데 모아 중앙의 戶部에 보고하게 하였던 것으로, 이를 ‘籍’이라 하였다. 그리고 各戶의 인구 등 정황을 등재한 책자를 각호에 발급하여 준 것으로 이를 ‘帖’이라 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戶口登記와 대체로 유사한 것이 된다. 특히 명대에는 매년 호적을 작성한 다음 各戶에 남겨서 다음번에 참고하게 하였던 것으로 이를 ‘執照’라 하였다. 인구와 토지, 賦稅와 매년 보충하는 변동 상황 등에 있어서는 관인을 찍어서 변경을 방지하였다. 宋昌斌, 『編戶齊民--戶籍與賦役』, 長春出版社, 2003. 24~27頁 참조.

D자료에서 幼學姜必文의 사망(51~54세)으로 그 妻인 黃氏(齡45)가 호수가 되면서 3살인 1子萬俊을 호의 구성원으로 처음 등재시키고 있다. 그 후 萬俊이 9살이 될 때 母 黃氏(齡51)는 늙음을 이유로 아들인 萬俊이 호수가 되게 되고 그의 母 黃氏(齡51)는 그 호의 구성원으로 지위를 바꾸게 된다.

C-8-5자료⁶¹⁾에서는 호수 業武助羅鎮軍官姜日春(年42)에서는 妻李氏(齡47)와의 사이에 1子 助羅鎮士兵萬俊이 7살에 처음 등재된다.⁶²⁾

C-9-1자료⁶³⁾에서는 호수 幼學李德春(年67)과 妻盧氏(齡67)와의 사이에 子와 子婦가 있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孫子 進善이 9살로 처음 등재되고 있다.

2) 10대에 처음 등재되는 사례

또한 C-2-2자료⁶⁴⁾에서는 戶首 忠義盧亮植(年45)의 호에 2자인 正壽가 10살에 처음 등재되고 있다.⁶⁵⁾ E-3-3자료⁶⁶⁾에서는 호수 忠義盧松林(年44)의 호에 11살의 1子祥憲이 처음 등재되고 있다. 또 F-2-3자료⁶⁷⁾에서 호수 幼學朱必宗(年72)의 호적에 12살의 3子 幸柱가 새로이 등재되고 있다.

C-13-1자료⁶⁸⁾에서는 호수 幼學金元玉(年61)의 호에 16세의 2子成律이 처

61) B-8-5: 業武助羅軍官姜日春年39 妻李氏齡38에서 C-8-5:業武助羅鎮軍官姜日春(年42) 妻李氏齡41 率1子 助羅鎮士兵萬俊7로 변화되고 있다. 이하 모두 앞선 식년의 호적중조와 대조하여 당년에 새롭게 등재된 子에 대하여 연령을 적시하게 되는 것이다.

62) 또 다른 사례로 E-4-2: 忠義盧德良年51 妻梁氏齡47에서 F-4-2: 忠義盧德良54-妻梁氏齡50 1子 正彦年6 으로 바뀐자료를 통해 1자 正彦이 6살로 처음 등재되고 있으며, F-6-3: 業武助羅軍官姜又煥年42 妻崔姓年42에서 F-6-2 業武助羅鎮軍官姜又煥年45 妻崔姓年45 1子學守年7으로 변화된 내용을 통해 1子 學守가 7살로 처음으로 등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3) B-9-1: 幼學李德春年64 妻盧氏齡64 率2子應連年41 婦張氏齡42 孫1子在善年15에서 C-8-5: 幼學李德春年67 妻盧氏(齡67)率1子應連年44 婦張氏齡45 孫1子在先年18 2子進善年9로 변화된 내용을 통해 2子進善이 9살에 처음 등가 이루어짐을 알게 된다.

64) B-2-2: 忠義盧亮植年42 妻金氏齡40--率1子松學年21에서 C-2-2:忠義盧亮植45-妻金氏齡43--1子 松鶴24 2子正壽年10로 변화됨으로써 2子正壽가 10살에 처음 등재됨을 알 수 있다.

65) F-4-1자료에서는 業武助羅軍官姜長淳50 妻梁姓年49 率任子桂律年10라고 하여 10살된 任子桂律이 처음 등재되고 있다.

66) D-3-3忠義盧松林41-妻孔氏齡42- 率同生弟正林年33 弟嫂李氏齡33 同生2弟學林年27 弟嫂尹氏齡27에서 E-3-3忠義盧松林44-妻孔氏齡45- 率同生弟正林年36 弟嫂李氏齡36 同生2弟鶴林年30 弟嫂尹氏齡30 率1子祥憲年11로 내용이 변경되면서 11살의 1子祥憲이 처음으로 등재되고 있다.

67) E-2-3: 幼學朱必宗年69 率2子再佑年22에서 F-2-3: 幼學朱必宗72 率2子再佑25 3자幸柱12로 바뀌면서 72세의 호수 幼學朱必宗이 12살의 3자幸柱가 새로이 등재되고 있다.

68) C-13-1: 幼學金元玉61-妻李氏齡-51-率1子長律28 婦金氏齡26_2子成律年16.

음으로 등재되고, D-3-4자료⁶⁹⁾에서는 호수 忠義盧國良이 사망하고 妻金氏(齡66)가 호를 승계하면서 18세의 2孫 斗吉이 처음으로 등재되고 있다.

3) 20대에 처음 등재되는 사례

그런가하면 D-8-3자료⁷⁰⁾에서는 戶首 忠贊知世鎭軍官夫大俊(年37)의 호에 20세가 된 同生2弟 贊伊가 처음 등재되고 있다.

또한 E-4-5자료⁷¹⁾에서는 호수 幼學姜道林(年69)의 호적에 22세의 孫2子 花俊이 처음 등재되며, 이어서 F-4-5자료에서는 호수 幼學姜道林이 嘉善大夫 兼五衛將姜應浩(年72)로 바뀐 다음 호적에 孫3子 吉俊이 12살로 처음으로 호적중초에 등재되고 있다. C-13-4자료⁷²⁾에서는 호수 幼學李永俊이 사망(62~65세)으로 호를 승계하는 아들 同完이 24세의 나이로 처음 등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E-8-1자료⁷³⁾에서는 호수인 幼學姜大仁(年64)의 호에 조카인 侄子 好俊이 22세의 나이로 등재되고 있다.

4) 30대에 처음 등재되는 子婦

여성의 경우 호수의 자의 婦로 등재되는 경우에 그 나이가 30세가 넘는 경

69) C-4-5: 忠義盧國良年58 妻金氏齡62 率同生弟正良年46 弟嫂徐氏齡46 率1子芳律年40 婦金氏齡41 2子秉律年27 孫1子斗辰年18에서 D-3-4: 忠義盧國良故代妻金氏齡66 率2孫斗吉年18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70) C-12-3 忠贊知世鎭軍官夫大俊年34 繼母金姓年64 率同生弟克川年28에서 D-8-3: 忠贊知世鎭軍官夫大俊年37 母金姓年66 率同生弟克川年31 同生2弟贊伊年20으로 바뀌어진다. E-8-3과 F-8-2 자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71) D-4-5: 幼學姜道林年66 妻宋氏齡66 婦金氏齡43 率2子鳳仁年36 3子志仁年34 婦金氏齡33 孫1子 良俊年21에서 E-4-5 幼學姜道林年69 妻宋氏齡69 婦金氏齡46 率2子鳳仁年39 3子志仁年37 婦 金氏齡35 孫1子良俊年24 孫2子花俊年22로 바뀐다. 여기서孫2子花俊年22이 새로이 등재되고 있 다. 이어서 F-4-5에서 嘉善大夫兼五衛將姜應浩72 妻宋氏齡72 婦金氏齡49 率2子鳳仁年42 3子 志仁年39 婦金氏齡38 孫1子良俊年27 孫2子華俊年25 孫3子吉俊年12로 내용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72) B-13-4: 幼學李英俊年62 妻李氏齡47에서 3년 후인 C-13-4에서 幼學李永俊故代子同完年24 母 李氏齡50로 변화되고 있다.

73) C-11-5: 幼學姜大仁年58 妻朱氏齡58 率1子俊伊年36 婦諸氏齡38; D-8-1: 幼學姜大仁年61 率1 子俊伊年39 婦諸氏齡41; E-8-1 幼學姜大仁年64 1子俊伊42 婦諸氏齡44 侄子好俊年22로 이어지 고 있는 것으로, E자료에서 22세의 侄子好俊이 전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어떤 누구와의 관 계에 의한 侄子인지를 알 수 없다.

우도 나타난다. 즉 D-4-5에서⁷⁴⁾ 호수인 幼學姜道林(年66)의 3子 志仁(年34)의 婦인 金氏가 33세의 나이로 처음 등재되며, C-4-4자료⁷⁵⁾에서는 호수인 忠義盧松林(年38)과 같은 호에 있는 同生弟 正林(年30)의 부인인 弟嫂 李氏가 30세의 나이로 처음 등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巨濟島 舊助羅 項里戶籍中草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호적자료가 가족관계의 실재를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호적중초를 기초로 가족관계의 한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의 의미는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정확하고도 면밀하게 가족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를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역사속의 가족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호적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상의 결함과 한계 등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하게 이루어질 여타의 연구를 통해 보완여지가 다분하다. 이를테면 본 舊助羅 項里戶籍中草자료에서는 호의 구성원에 있어 미혼 여성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A(1863年, 癸亥)자료에서는 호의 구성원으로 미혼의 여성이 기록되어 나타나지만(74戶(15통4호)의 총인구247명 : 남 141명, 여106명), 그로부터 18년 후에 작성된 B(1881年, 辛巳)자료(68戶(14통3호)의 총인구 212명: 남 126명, 여86명)로부터 그 이하 자료에서는 미혼의 여성이 거의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C(1884年, 甲申)자료 (67戶(14통2호) 총인구 211명

74) C-7-2: 幼學姜道林年63 妻宋氏齡63 率1子尙仁年35 婦金氏齡40 2子奉仁年33 婦潘氏齡31 3子志仁年31 孫1子良俊年18이 D-4-5: 幼學姜道林年66 妻宋氏齡66 婦金氏齡43 率2子鳳仁年36 3子志仁年34 婦金氏齡33 孫1子良俊年21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D에서 3子志仁의 婦인 金氏(齡33)가 새로이 등재되고 있다.

75) B-4-4 忠義盧松林35-妻孔氏齡36- 率同生弟正林年27 同生2弟鶴林年21에서 C-4-4 忠義盧松林38-妻孔氏齡39- 率同生弟正林年30 弟嫂李氏齡30 同生2弟鶴林年24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C에서 同生弟 正林(年30)의 아내 弟嫂李氏(齡30)이 처음 등재되어 나타난다.

: 남 127명, 여84명), D(1887年, 丁亥)자료(43戶(9통3호)의 총인구 : 113명), E(1890年, 庚寅)자료(44戶(9통4호)의 총인구 : 122명), F(1893年, 癸巳)자료(43戶(9통3호)의 총인구 125명 : 남 83명, 여 42명)를 통해 나타나는 내용에는 호수와 함께하는 구성원으로 미혼여성은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음을 유념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 자료를 통한 인구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겠으나, 미혼여성이 기록되지 않은 비율을 평균값과 대비 추론하여 이를 보완하는 식으로의 해석적 보완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어촌사회에서 외롭게 떨어져 보관되어온 호적중초자료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실상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타진하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한 검토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연속되는 자료상의 기록내용을 활용하여 가족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적 분류와 분석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거제도 어촌사회에서 여성의 호수로서의 지위는 일시적이었던 것이며, 아들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50세 정도를 지나서는 年老함을 이유로 戶首를 아들에게 이양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혼인과 관련하여서는 A자료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부부모두 20대 혼인은 42건 중 22쌍이 된다. 그 중 6쌍은 여성이 연상(1세~5세)이며, 10쌍은 동갑으로 나타난다. 부부 중 한 쪽이 10대인 혼인의 경우는 전체 5건으로써, 10대 혼인의 경우 여성이 전부 연상(1~6세)인 특징이 있다. 또한 혼인에 있어서는 동성혼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부부만으로 호를 이루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리고 기타 형제 또는 남매가 한 호를 이루는 경우도 있으며, 같이하던 가족이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결국 단독으로 호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여성단독호의 경우 단독으로 호를 이어가다가 나중에는 호가 단절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호의 승계는 호수인 父 및 祖父의 사망이나 母의 늙음이라는 사유를 담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즉, ‘故代子’ ‘故代養子’ ‘故代孫’ ‘故代妻’ ‘故代弟’ ‘老代子’ 등을 통하게 되는 것으로, 당해 호를 다음의 子·孫·妻·弟 등에게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호수의 변화와 함께 가족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즉, A-4-5자료에서 忠義盧昌植 年39 妻李氏齡42 a.率同生弟亮植年24 b.率1子松林年17의 경우는 18년 후 B자

료에서 A에서의 호수인 忠義盧昌植이 사망하면서 同生弟亮植과 1子松林의 호가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의 호를 구성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호의 승계는 일반적으로 前戶首의 1子が 이어감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2子 이하의 자가 호를 승계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특히 나이가 많은 호수의 경우 1자 보다는 2자 이하의 자에게 호가 승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1자의 독립이나 또는 사망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으로 호에 최초로 등재되는 나이와 관련하여서이다. 최초로 등재되는 나이는 국가의 인구조 파악이 되는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生齒以上으로 표현되며,⁷⁶⁾ 이후 지속적으로 연령에 따른 부세 및 공전을 담당하는 주체로 산입된다.⁷⁷⁾ 따라서 부세 및 여타의 공전에 대한 징수를 주목적으로 설정할 때 호적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이를 담당할 인원을 작성하여 기록하는 것이 된다. 본 項里戶籍中草의 경우 이러한 목적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또한 인구의 실질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처음 등재되는 연령을 보면서 인구실체를 존재하는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정 사회내의 변동하는 실상을 현재적 관점과 기준으로 정밀하게 추적하면서 기록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자료적 가치와 연구의 유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역사자료에 대해 현재적 오만으로 자료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재단하는 결과를 구축할 지도 모를 일이 된다. 호적작성의 근본목적이 인구상황의 파악이라는 점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당해 호적자료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내용면에서 통상적 자료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성과도 분

76) “長登萬民之數 自生齒以上 皆書于版 辨其國中 與其都鄙 及其郊野異其男女 歲登下其死生 及三年大比 以萬民之數詔司寇 司寇及孟冬祀司民之日 獻其數于王 王拜受之 登于天府內史 司會冢宰貳之 以贊王治。”<周禮 秋官> 즉, 주대에는 체계적인 호구등기와 관리제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 까지 인구를 책임지는 전문관원이 설정되고 중앙에서는 小司寇가 司民을 지휘하고 지방에서는 향이나 그에 따른 각급관원들이 책임을 지고서 호적자료를 관리하게 된 것이다. 陸益龍, 『戶籍制度---控制與社會差別』, 商務印書館, 2003. 71~72頁.

77) 賦役年齡과 관련하여 唐宋代와 明清代의 일반적인 분류를 참고로 소개한다.
唐宋代 : 黃(3歲以下--唐宋--免役), 小(4~15--唐宋--免役), 中(16~19歲--唐--半役, 16~20歲--宋--半役), 丁(20~59歲--唐--全役, 21~59歲--宋--全役), 老(60歲以上--唐宋--免役).
明清代 : 未成丁(15歲以下--明清--免役), 成丁(19~59歲--明清--服役), 老(60歲以上--明清--免役). 宋昌斌, 『編戶齊民--戶籍與賦役』, 長春出版社, 2003. 21~23頁 참조.

명히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거제도 項里戶籍中草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 내지 제약조건들을 전제로 하면서도 당시를 담고 있는 실증자료라는 점을 중시하면서 1800년대 후반 巨濟島 項里의 가족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당시 현지의 가족실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작은 하나의 검토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검토의 축적은 역사 속에 사라져간 한 지역의 가족 관계에 대한 실체를 구명하는 중요 자료로 기여하게 될 것임을 믿게 된다.

투고일 : 2012. 10. 04.

심사일 : 2012. 10. 31.

게재확정일 : 2012. 11. 22.

참고문헌

- 『牧民心書』 『經國大典』 『續大典』 『肅宗實錄』 『備邊司謄錄』.
『古文書集成35--巨濟舊助羅里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8.
巨濟郡誌編纂委員會 編, 『巨濟郡誌』, 1963.
전라남도 신안군문화원간, 『金理守傳記』, 2009.
高昌錫, 『濟州道古文書研究』, 도서출판 世林, 2002.
김경옥, 『조선후기 도서연구』, 혜안, 2004.
호적대장연구팀 편, 『단성호적대장연구』, 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 2003.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간, 『동아시아와 유럽의 결혼과 가족』, 2007.2.
金東攄,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 제20호, 2005.
金東攄,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연구-- 大靜縣戶籍中草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李成妊, “19세기 제주 大靜縣 邑治 거주민의 혼인양상--大靜縣衙中日記와 東城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第57輯.
김창민, “호적중초에 나타난 19세기 제주도가족과 가구의 성격”, 『지방문화』, 제13권2호, 2010.
李鍾吉, “同姓同本禁婚規定의 改正을 위한 基礎課題의 검토”, 『가족법연구』 제12호, 1998.
宋昌斌, 『編戶齊民--戶籍與賦役』, 長春出版社, 2003.
陸益龍, 『戶籍制度--控制與社會差別』, 商務印書館, 2003.

<국문요약>

戶籍資料를 통해 본 漁村社會의 家族關係 - 巨濟島 舊助羅 項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

이 종 길

본 연구는 1800년대 후반 어촌사회의 가족관계를 현전하는 戶籍中草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실상을 구명한다. 주된 검토대상 자료는 경상남도 巨濟島地域 舊助羅項里的 戶籍中草이며, 남해군의 호적자료, 그리고 제주도 대정현의 호적자료 분석 내용 등을 참고한다.

戶籍은 국가가 영역 내에 정주하는 인구에 대해 통치 및 관리를 위해 실상을 조사 기록한 기본자료이다. 국가는 호적자료에 기록된 인구에 대해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국가에 대해 이들은 국민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를 유지 관리하는데 요구되는 조세와 병역의무 등을 기본으로 하여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여러 부담은 이러한 호적자료의 작성내용을 기초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어촌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며, 그러한 어촌사회에서 영위되는 가족관계의 실상을 탐구한다. 가족 내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출생과 사망, 혼인과 가족관계의 형성, 그리고 그 변천과정과 변화요인 등을 실증자료를 통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어촌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성되어 운영되는 사회상과 그에 따른 개인별 신분 및 직역 등에 대해서도 호적자료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이해를 함께 추구한다.

여성호의 일시성과 남아의 호 승계과정, 형제로 구성된 호, 대가족의 구성과 그들의 분화과정, 혼인연령과 혼인 후 자녀의 호적 등재시기, 혼인관계의

추정, 사망연령과 호의 승계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어촌사회의 실상이 부분적으로나마 새롭게 구명됨으로써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어촌사회의 역사적 연속성과 변형에 대한 이해에 한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主題語: 漁村社會, 巨濟島 舊助羅‘項里戶籍中草’, 家族關係, 大家族, 戶首, 戶籍制度, 朝鮮後期

<Abstract>

**A Study on the Family relationship at Fishing
Village in the late Joseon Period**
**- Centering around the *Geojedo Gujora 'Hangri Hojeokjungcho'*
Census -**

Lee, Jong-Khil

Fishing village is different from farm village in terms of its life base. So far, fishing village has been studied by many disciplines including Sociology, Anthropology, History(Economic History) etc.. This study tries to show what the family relationship of fishing villages has been sustained in the late Joseon Period, making use of the Census Register and any other old documents.

In order to study family relationship of fishing villages, I analysed old document of *Geojedo Gujora 'Hangri Hojeokjungcho'* Census etc. in the late Joseon Period. This '*Hangri Hojeokjungcho'* Census was written every three years(1863~1893), which contribute to shedding light on the diverse aspect of Geojedo fishing village society at that time. I make this article as following to look for the true picture of family life, family scale and the process of human existence. Granting that '*Hangri Hojeokjungcho'* Census is not true and makes an error, I think that it forms the foundation of understanding the family relationship in Joseon society.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s social aspect of fishing villages in the late Joseon Period.

Key Words: fishing village, Geojedo Gujora '*Hangri Hojeokjungcho*'
Census, family relationship, large family, the head of a family,
census registration system, the late Joseon period